www.mogef.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743-10

2018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 경찰청,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법률상 명칭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성폭력'이라는 부정적 의미보다 피해자가 시설 이용으로 해바라기 꽃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을 함께 가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해바라기'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센터 및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 1월부터 지금의 '해바라기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contents

제1장 총칙	1
제2장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19
제3장 센터 운영	91
제4장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	117
제5장 보조금의 관리	137
제6장 보고 및 관련 서식	161
제7장 업무 참고자료	195
<mark>참고1</mark>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정 197
참고2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정(안) 205
참고3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등	208

01

총 칙



I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목표

전략 목표

여성·아동폭력에 적극 대처 및 여성·아동인권 보호지원체계 구축



- 1.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 3.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 4. 지원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피해자의 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



II

사업 연혁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전반

	7 O M = 1				
	주 요 연 혁				
1992	- 성폭력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결의(3.2, 여성정책심의위원회) - 성폭력근절 실무추진회의(4.28, 국무총리실) - 시·도에 보호업무지침 시달(5.18) - 시·도에 보호시설 시범운영지침 시달(8.31) •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서울 자매복지회관 지정)				
199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성폭력상담소 설치(11월)				
1995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1월)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1월)				
2000	-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 신설(9월)				
2001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이관(1월) -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위촉(10월) • 경찰병원 등 7개소				
2002	- 성폭력체크리스트(진료기록) 및 성폭력응급 키트 개발(2월) - 시·도별 종합병원급 전담의료기관 확대 지정(11월) • 부산의료원 등 12개소 지정				
2003	- 아동성폭력전담기구 설립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2004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4월, 5월)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18), 연세의료원 위탁・운영 -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제도 개선 ・가정・성폭력 치료비 통합운영 ・시・군・구 치료비 집행 및 치료비집행절차 간소화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비 75,000원 신규 인정				
2005	- 영남권역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 9) - 호남권역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29)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 추진(경찰병원 등 8개소) - 경찰병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8.31)				



	주 요 연 혁
2006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6개소 신설 및 운영(총 14개소) - 제1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개최(2.22)
2007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의 사업수행방식 전환(지자체보조)
2008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08.4~) ※ 9개 부처 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구성·운영(간사부처 : 여성부)
2009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09.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국회제출('09.9.15) 및 여성위 통과('09.12.7)
201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4.15)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시 - 보완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설치·운영(2개소) ※ 경남(창원)전용쉼터(8.24개소), 경북(김천)전용쉼터(9.1개소)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4개소 신설(부산, 강원영동, 전남, 서울)
201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1.1)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개소 신설(경북, 울산) -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배치·운영(4월~) - 제1회 성폭력 추방 주간 실시
2012	- 성폭력 근절대책 수립·추진('12.7~12) ※ 의료비 지원 확대, 성폭력 예방 사업 및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 강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설치(12.12) ※ 강원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버라기아동센터 통합 -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2013	 관계부처 합동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수립('13.6) 성폭력 관련 법령 개정('13.6)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전연령), 친고죄 전면 폐지 등
2014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 돌봄비용 지원 시행(1월) 치료 동행서비스 시행(4월) 해바라기센터(거점) 신규 운영(11월)
201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 -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11월) 및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12월) 신규 개소 - 피해자 돌봄비 지원 대상 13세 이상 1~3급 장애인까지 확대
2016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12월) 신규 개소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지원(제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시행('16.6.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16.9.3.)



2 해바라기센터 연혁

	주 요 연 혁
2003	 아동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방안 검토(6월) 성폭력 피해 진료 및 수사지원 지연으로 3일간 병원, 경찰서 전전하는 사건 발생(5월)으로 여성·아동에 대한 원스톱지원시스템 필요성 대두 해바라기아동센터 설립 추진기획단 구성(11월)
2004	- 해바라기아동센터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2월) -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월)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전문적 치료 및 서비스제공 목적
2005	- 영남권역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월) - 호남권역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월) - 서울 경찰병원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학교·여성폭력 서울 원스톱지원센터*』로 전환 개소(8월)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365일 24시간 통합서비스 제공 목적 - 여성부와 경찰청 간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협의(10월) - 여성부·경찰청·7개병원장 3자 공동 업무 협약 체결 및 부산 원스톱지원센터 개소(12월)
2006	- 여성부·경찰청·6개병원장 3자 공동 업무 협약 체결 및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 등 11개 원스톱지원센터 개소(12월)
2007	-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의정부 의료원 개소(9월)
2008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협약 주체 변경 (시도, 지방경찰청, 의료기관, 1월) 서울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12월) 경기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12월)
2009	 전북, 인천, 강원, 충청, 경남, 부산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7~8월) 폭력피해 여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진단 운영(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통합 등 논의) 지원서비스 개편 토론회(9월)



	주 요 연 혁
2010	- 충남, 전남 원스톱지원센터 개소(1월) - 부산 원스톱지원센터와 부산해바라기아동센터를 부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통합, 최초 개소(1월)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에 서비스 제공 목적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3개소 신설(서울, 강원영동, 전남, 9~12월) - 센터 지원을 위해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설치(6월)
2011	- 울산원스톱지원센터를 울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확장설치(12월)
2012	- 강원원스톱지원센터와 강원 해바라기아동센터를 강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통합(12월)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대표 번호 신설(1899-3075)
2013	- 인천북부, 경기서부, 부산 원스톱지원센터 등 3개소 신규 설치(5~9월) - 경기 원스톱지원센터를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확장 설치(12월)
2014	-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기능 조정 및 명칭일원화 결정(7월) - 해바라기아동센터 전담경찰 지정, 수사기능 지원(8월) - 센터 명칭일원화 관련 시・도 의견조회, 전국 센터 부소장 회의(7~10월) * 3개 센터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 - 해바라기센터 로고 및 캐릭터 신규 제작(10월) -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로 전환(11월) - 대전원스톱지원센터를 대전해바라기센터로 확장 설치(12월) -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12월)
2015	 제주원스톱지원센터를 제주해바라기센터로 확장 설치(1월)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11월)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12월)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사업자 변경 개소(12월)
2016	- 부산해바라기센터 사업자변경 개소(3월)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12월) 신규 개소
2017	-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12월) 신규 개소



${\rm I\hspace{-.1em}I\hspace{-.1em}I}$

해바라기센터 개요

사업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2 법적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설치·운영 현황

가. 연도별 운영 현황

od E	중나게	해바라기센터		
연도	합계	위기지원	아동 · 청소년	통합
2004	1개소		1개소	
2005	5개소	2개소	3개소	
2006	17개소	14개소	3개소	
2007	18개소	15개소	3개소	
2008	20개소	16개소	4개소	
2009	28개소	18개소	10개소	
2010	30개소	17개소	9개소	4개소
2011	31개소	16개소	9개소	6개소
2012	30개소	15개소	8개소	7개소
2013	33개소	17개소	8개소	8개소
2014	34개소	16개소	8개소	10개소(거점1)
2015	36개소	16개소	8개소	12개소(거점1)
2016	37개소	16개소	8개소	13개소
2017	38개소	16개소	8개소	14개소

나. 설치·운영 현황

시도별	운영기관	명칭	개소일	기능
중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10. 6.23.	중앙
	경찰병원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05. 8.31.	위기지원
	보라매병원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08.12. 3.	위기지원
21.0	서울대병원	서울해바라기센터	'10.12. 3.	통합
서울 	연세의료원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04. 6.18.	아동 · 청소년
	삼육서울병원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15.11.11.	통합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16.12.14.	통합
부산	부산의료원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13. 9. 6.	위기지원
구산 	부산대병원	부산해바라기센터	'16. 3. 1.	통합
rll 7	대구의료원	대구해바라기센터	'06. 5. 9.	위기지원
대구 	경북대병원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05. 6. 9.	아동 · 청소년



시도별	운영기관	명칭	개소일	기능
	인천의료원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06. 3.31.	위기지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13. 5. 9.	위기지원
	가천대길병원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09. 7.17.	아동·청소년
ਹ <u>ੀ</u> 2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	'06. 9. 4.	위기지원
광주	전남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05. 6.29.	아동 · 청소년
대전	충남대병원	대전해바라기센터	'14.12. 1.	통합
울산	울산병원	울산해바라기센터	'11.12. 1.	통합
	의정부의료원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07. 9.18.	위기지원
	한도병원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13. 7.24.	위기지원
경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14.11.19.	통합/거점
	명지병원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14.12.26.	통합
	분당차병원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08.12.26.	아동 · 청소년
강원	강원대병원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12.12.12.	통합
성된	강릉동인병원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10. 9. 8.		통합	
충북	청주의료원	l료원 충북해바라기센터 '06. 2. 8		위기지원
ठम	건국대충주병원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09. 7.22.		아동·청소년	
충남	단국대병원	충남해바라기센터	'10. 1.13.	위기지원
	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북해바라기센터 '06.		위기지원
전북	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아동·청소년
	원광대병원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17.12.20.	통합
 전남	성가롤로병원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10. 1.28.	위기지원
신급	목포중앙병원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10. 9.29.	통합
	안동의료원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06. 1.12.	위기지원
경북	포항성모병원	병원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김천제일병원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15.12. 1.	위기지원
 경남	경상대병원	경남해바라기센터(아동)	'09. 8. 7.	아동 · 청소년
ÓΠ	마산의료원	경남해바라기센터	'06.12. 1.	위기지원
제주 한라병원 제주해바라기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	'15. 1.28.	통합



4 사업 주체별 역할

가. 여성가족부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령 제정 및 정비
- ㅇ 해바라기센터 사업지침 등 운영방향 수립
- ㅇ 해바라기센터 설치 계획 수립 및 지원
- ㅇ 해바라기센터 사업비의 교부 및 평가
- ㅇ 해바라기센터 관리 감독 및 지도
- ㅇ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전산화 관리 및 지도

나_. 시·도

- 중앙정부와 시·군·구간 연계역할
- 해바라기센터 사업 계획 승인 및 집행
- ㅇ 해바라기센터 관리 감독 및 지도
- 이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센터장, 소장, 부소장 등) 관리
- 해바라기센터 예산 교부 및 정산, 사업(정산)결과 보고
- ㅇ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전산화 관리 및 지도

다.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 해바라기센터 기본 운영방향 수립 및 설치계획 수립 지원
- 해바라기센터 관리 감독 및 지도 ※ 수사분야에 한하며, 다른 분야는 여성가족부 또는 시·도와 협의
- 배치 경찰관 인력확보 및 수사지원
-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속기사, 진술분석 등 지원
- 사건 수사지침 등 지원



라. 센터 운영 기관(의료기관 등)

- ㅇ 해바라기센터의 운영
- 피해자에 대한 상시 의료지원
- 해바라기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관리

마. 해바라기센터

- 사업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ㅇ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지원체계 운영
- ㅇ 사건 조사, 수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ㅇ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 ㅇ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 종사자 채용 등 인사관리 전반
-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사용
- 기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의뢰하는
 사업의 유영

바. 해바라기센터(거점)

- ㅇ 상담, 의료, 법률 등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지원 표준모델 수행
- o 의료 및 임상 등 관련 피해자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ㅇ 지역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 지원 관련 슈퍼비전 및 자문 제공
- 중요 사건에 대한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과 공동 대응, 센터 소속 전문가 파견 또는 서면 등을 통한 의료·임상 관련 지원
- 지역 해바라기센터의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현장실습, 의료·임상관련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신규 해바라기센터 설치 시 의료 · 임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o 의료·임상관련 네트워크 구축
- 여성가족부, 경찰청, 시·도,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등에서 요청하는 사안 및 자료(개인정보 제외) 요청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사.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다(이하 '중앙지원단')

- ㅇ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지원
- 해바라기센터 실적 관리 및 지원
-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ㅇ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피해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
- ㅇ 피해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ㅇ 아동ㆍ여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관 홍보
- ㅇ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전산화 총괄 운영 및 관리 지원
- 여성가족부, 경찰청, 시·도, 해바라기센터(거점),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요청 하는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아. 중앙지원단 및 해바라기센터(거점) 협조

○ 중앙지원단 및 해바라기센터(거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각 지역 센터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역 센터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mathbf{IV}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총칙	개요	○ 설치·운영 현황	○ 설치·운영 현황 (수정) - 신규 센터 반영
		10. 피해자 부대비용 지원 o 교통비는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실비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도서산간 지역은 예외)	10. 피해자 부대비용 지원 ○ 교통비는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실비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도서산간 및 대중교통 불가한 경우는 예외) - 시내: 10,000원 이내 / 시외: 30,000원 이내
여성 아동 폭력	성폭력 피해자 수사 상담 의료 지원	○ 기타 피해자 치료·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피해자 및 가족캠프, 심리검사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기타 피해자 치료·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피해자 및 가족캠프, 심리검사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u>피해자 및 가족캠프 관련 예산 집행은 본</u>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기준의 단가 등을 준용할 수 있다(추가)
피해자 지원		12. 사례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 자원 연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보듬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센터	12. 사례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 자원 연계 <u>- 여성긴급전화 1366</u>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보듬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 정신건강복지센터</u>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심리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일반 절차0 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가능하면 접수 면담 당일 이루어지도록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나. 일반 절차 이 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u>빠른</u>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담 지원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나. 일반절차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나. 일반절차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사례별 진행 절차) 4. 심리치료(치료적 성교육, 단기 또는 장기 심리치료) •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나 또래 간의 가벼운 성적 놀이 등이 보고되었으나 심리적 후유증이 경미하며 법적 진행 가능성이 없고, 적절한 성에 대한 교육만 요구되는 경우 실시한다.	또는 장기 심리치료) •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나 또래 간의 가벼운 성적 놀이 등이 보고되었으나 심리적 후유증이 경미하며 법적 진행 가능성이
		5. 심리 치료 나. 심리치료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5. 심리 치료 나. 심리치료자 ○ 정신 <u>건강</u> 임상심리사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 지원	 5. 심리 치료 마. 치료 지원 범위 ○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이외의 부모 자녀관계나 기질적 문제가 있는 경우 센터치료 후 자비부담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 치료를 받게 되는 기관이나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진료기록 및 평가보고서를 요청할 시 피해자 또는보호자의 발급 신청 등을 받도록한다. 오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요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피해의 후유증 이외의 부모자녀 관계나 기질적 문제가 있는 경우 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후유증 치료
		7. 동행서비스의 제공 바.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 이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실비) 외 일비(하루 2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되는 시간·거리 등을 감안하여 최대 5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음	7. 동행서비스의 제공 바.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 이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실비) 외 일비(하루 2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되는 시간·거리 등을 감안하여 최대 7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음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신설〉	7. 구상권의 행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급할 경우 가정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로서, 시・군・구에서는 구상권 행사 이유로 상담소 및 보호 시설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시・군・구청장은 가정폭력행위자 명단을 관리하고 구상권(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을 행사하되다음의 경우 구상권 행사 불가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항) •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 보호를 받은 경우 •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의 수급자인 경우 •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 연간 피해자 1인 이료비 지원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가정폭력행위자가 전출시, 전출지 시・군・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일체 이송 • 구상권은 지방채권으로 관리하며, 지방재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 	
	성매매 피해자 지원	7. 의료 지원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19조(의료비의 지원범위) ※ 성매매피해자 의료비용은 성매매피해 상담소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	7. 의료 지원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19조(의료비의 지원범위) ※ 성매매피해자 의료비용은 성매매피해 상담소에 <u>연계하여</u>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센터 운영	해바라기 센터 (아동형)	〈신설〉	심리치료사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 (수습직원) O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 차료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한다.	



구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	해바라기 센터 (통합형)	1. 종사자의 수	1. 종사자의 수 ※ 센터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군별 종사자 수 조정 가능		
	해바라기 센터 공통 사항	1. 종사자 임면 및 채용 조건 다. 종사자 채용 시 구비서류	1. 종사자 임면 및 채용 조건 다. 종사자 채용 시 구비서류 <u>이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u> <u>경력 조회 결과서류</u> 〈추가〉		
		 3. 종사자 해고 등의 제한 해고의 예고 적용 제외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의 자 			
보조금의 관리	예산 편성	1. 예산 편성 ○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 시에는 센터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 ※ 경미한 예산계획 변경은 센터 자체 내에서 내부 품의를 거치고, 관·항의 변경 또는 목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	1. 예산 편성 ○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 시에는 센터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 ※ 경미한 예산계획 변경은 센터 자체 내에서 내부 품의를 거치고, 관·항의 변경 또는 목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 ※ 다만, 100만원 이하의 예산계획 변경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관련 내용을 보고〈추가〉		
		4. 예산 과목 및 내역 나. 세출예산 과목구조 〈기존 표 삭제〉	4. 예산 과목 및 내역 다. 세출예산 과목구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추가〉		
	예산 집행	마. 전문상담위원 상담료 지급기준	마. 전문상담위원 상담료 지급기준		
		대상 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기준 기준 기급 기준		
		전문 기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부부상담, 자녀 문제상담 등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전문가 생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상담 내역 등이 포함된 상담기록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1.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부부상담, 자녀문 제상담 등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전문가 생담 1건 30,000원 ※ 내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상담 내역 등이 포함된 상담기록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 단 상담위원의 자격을 고려하여 센터 내 예산에 따라 최대 5000원		
		위원 ※ 내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상담 내역 등이 포함된 상담기록지에	위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보조금의 관리	종사자 급여 기준	 호봉 책정 기준 석사 1년, 박사 수료 2년(석사를 포함 하여 총 3년)의 호봉을 추가 산정 	 호봉 책정 기준 석사 1년, 박사 수료 2년(석사를 포함 하여 총 3년)의 호봉을 추가 산정(2017년 이전 채용자) * 2018년 이후 신규 채용자부터 미적용 〈추가〉 	
		2. 유의사항 ○〈신설〉	 2. 유의사항 ○ 근로계약 작성시 2년 이상 근로자 중 근무 상황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통보만 하여도 된다. 	
		3. 수당 권고 금액 * 〈신설〉	3. 수당 권고 금액 ** 업무시간 외 비상호출 사항은 추가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 금액은 센터의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 판단이 필요하며 수탁병원의 지침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보고 및 관련 서식	서식 12-1	센터 이용 동의서 2. 센터 이용 시 처음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도착한 이후 초기면담부터 전 치료과정을 녹화함에 동의합니다.	센터 이용 동의서 2. 센터 이용 시 처음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도착한 이후 초기면담부터 전 치료과정을 녹화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3자제공 동의서 중 영상 기록물 관련 내용과 중복됨) (추가)	
	서식 12-2	센터 이용 동의서 2. 센터 이용 시 초기면담부터 치료과정을 녹화함에 동의합니다.	센터 이용 동의서 2. 센터 이용 시 초기면담부터 치료과정을 녹화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서 중 영상기록물 관련 내용과 중복됨) 〈추가〉	
업무 참고 자료	해바라기 센터 운영 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u>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참석수당 지급</u> 불가 〈추가〉	

02

여성 ·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



I

성폭력 피해자 수사 상담 의료지원

1

지워 대상

-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 범죄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해 가급적 지원(예 : 데이트 강간 등)
 - 성인 남성 피해자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함
 - * 심야시간 대 주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경찰서와 협의

2 접 수

- 최초 접수 시 피해자의 심리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순서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 피해자 또는 가족 등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경우
 - 성폭력상담소 등 NGO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
 -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 사건 접수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지원요청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정폭력 신고 시 접수 요령(경찰관)

- 범죄 발생장소 및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다.
 - * 지원센터에서 직접 신고접수 시 지체 없이 관할서와 공조
 - * 전화가 끊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신고자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둔다.
 - * 13세 미만 아동 ·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연락, 출동 요청
-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지 파악한다(특히, 피해자 안전확보에 유념).



- 비노출 출동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다
 - ➡ 경찰관이 출동해 주길 원하는 장소 파악
 - ➡ 출동 경찰관은 사복을 착용하고 일반 승용차량 이용하여 출동하도록 조치
- 피해자 상해 여부 파악, 119 등 신속 출동조치하고 병원으로 후송 지시한다.
- 흥분상태에 있는 피해지를 안심시키고 가해자 위치 및 인상착의를 파악·전파한다.
 - ➡ "곧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 할 테니 안심하세요"
 - ➡ "가해자는 현장에 같이 있나요? 언제 어디로 도망갔나요."
 - ➡ "가해자는 연령, 키, 옷 색깔, 머리모양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증거확보를 위한 유의사항을 고지한다.
 - ➡ "속옷 등 옷을 갈아입지 말고 현장을 청소하지 마세요"
 - ➡ "양치, 세수, 목욕 등 몸을 씻지 말고 가능하면 대·소변도 삼가세요"
 - ➡ "옷을 갈아입었다면 빨지 말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세요"
- 가정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인 경우 즉시 피해자를 피신시킨다.
 - ➡ "가해자와 함께 있으면 이웃집이나 가까운 가게로 피신하세요."
 - ➡ "도와줄 사람은 누구세요? 연락해줄 테니까 연락처를 가르쳐주세요."
 - ➡ "아이와 함께 일단 피신하시면 그쪽으로 경찰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피해자 및 가족의 방문 신고 시 즉시 여경 성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인계 처리한다.

3 수사 지원

-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 성범죄 특성상 사건 접수를 꺼리는 피해자를 안정
 시켜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토록 한다.
 - * 진술녹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법원 등을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 과정에 활용
 - * 성인인 경우라도 피해자 안정과 조사 횟수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가 진술녹화를 원할 경우 진술녹화 적극 실시
- ㅇ 피해자 진술조서
 - 증거채취 및 치료 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 발생지 경찰관서로 응급키트, 진술녹화 CD, 진술조서 등 사건을 인계하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



- 진술조서 등 작성시 피해자 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특히,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 채취 후 피해자의 고소·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유전자 등 감식 의뢰, 향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 형사·민사 절차상 피해자 지원 제도를 고지함
 -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법률구조사업, 전문가의견조회, 진술조력인, <u>신뢰관계인</u> 배상명령제도 등 연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법적 근거 : 성폭력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지원 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 내용 :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 보장
- 지원 절차
 - 피해 사실 진술에 앞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신청이 가능함을 고지
 -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가급적 피해자 지원 경험이 많고, 성실한 변호인을 성별을 고려 하여 관할 검사에게 지정 요청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향후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도 가능함을 고지

5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 법적 근거 : 성폭력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조회)
- 지원 대상 :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 지원 내용 :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 등

☆ 진술조력인

- 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 지원대상 :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지원 절차
 - 검사 또는 시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신청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 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동 법 제 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 신뢰관계인

- 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및 제221조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 前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법정 대리인의 신청 시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 조치
 - *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형사소송규칙)
 - ※ 피해자 가족·변호사 등이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센터 상담원은 사전 면담 등을 통해 라포 형성 후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별 유의사항
 -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 진술녹화 시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동석 여부가 해당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최대한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
 - ※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성폭력특례법 제30조 제6항에서 피해자의 반복 소환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예외 규정 마련
 - 피해자 등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한다고 해도 신뢰관계인 동석의 취지 및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효과 등을 설명하여 적극 설득
 - (13세 미만 및 장애인) 피해자 측의 신청이 없어도 신뢰관계인 동석이 법률상 의무임을 설명,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



4 **사건 조사 시 행동요**령

가. 성폭력 사건 공통 사항

- ㅇ 조사 전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 조사 전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조사 시 동행토록 한다.
- 피해자 심리상태를 고려, 피해자 조사는 진술녹화실, 피해자 안정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곳에서 진행하며, 충분한 라포¹)형성을 하도록 한다.
- 고소사건의 경우 발생지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일선 경찰서의 업무담당자에게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의 특수성 등을 설명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건 내용에 관해 진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 진술시 끼어들기를 자제하고 끝까지 경청한다.
- 피해자를 탓하거나 모욕·굴욕감을 주는 용어, 반말, 가해자 옹호, 불친절,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나 합의를 종용하는 언행을 금한다.

☞ 피애자를 탓아거나 모욕 굴욕감을 주는 용어 예시

- "조심하지 그랬어요?"
- "여자가 겁도 없이 늦게 다녀요?"
- "남자보다 술을 더 먹었네요."
-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요?"
- "우리도 신이 아닌 이상 양쪽 말을 다 들어 봐야 합니다."
- "싫다고 안했어요?"
- "도망 안가고 뭐 했어요?"
- "옆에 사람들도 많은데 소리 안 질렀어요?"
-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신고한 이유가 뭐죠?"
- "그런 식으로 진술하면 가해자 검거를 못합니다."

¹⁾ 상담자와 내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밀감, 유대감, 존중, 호의, 존경 등 어색한 낯가림을 극복한 교감상태



- 피해자에게 증거보전 신청제도 등을 적극 고지하여 진술횟수를 최소화한다.
 - 피해자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성폭력 상담소 등의 상담기록 또는
 연계의뢰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상담기록을 첨부한다.
- 피해자 신원·연락처 등이 가해자 및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 한다.(원칙적으로 비공개 수사, 피해자 인적사항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언론 취재 요청 시 대유요령

- 언론취재 요청 시 보고 후 지침에 따르되, 창구를 '관리자'로 단일화하고 익명처리 하며, 신원을 유수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의 배포를 금지('검거보고'시에도 같음)
- 당사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되(성폭법 준수), 피해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의 대응매뉴얼 참조
-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주변인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법률지원을 원할 시 피해자 국선변호사(민·가사는 무료법률지원)를 연계한다.
- 피해자가 향후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조서 작성 후 피해자가 조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날인토록 안내한다.

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 조사 전,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 동행토록 한다.
- 조사 전, 진술녹화 취지를 설명하고 진술녹화에 관한 동의를 얻는다.
- 조사 전,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 여부에 관한 동의를 얻는다.
 - * 국선변호사 지정요청 시 기능하면 사건 경험, 피해자 성별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활용한다.
- o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고 진술녹화를 실시한다.
- 구속영장 신청 시, 진술녹화자료를 첨부하여 증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ㅇ 보호자와 아동을 비판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한다.
 - * 피해자 부모가 죄책감을 가지고 상처를 입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부모도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 피의자가 범행 부인 시, 아동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 피해아동의 유치원·학교 등에 피해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 ㅇ 목격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하에 조사한다.
-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도움을 주도록 한다

₩ 이동성폭력 시건 초동 수사의 중요성

- 아동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아동성폭력의 특성 상 물적 증거가 제한되고, 기억력 소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동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치료와 보호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아동 친화적인 방법으로 진술녹화를 실시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
- 검사에게 요청하여 진술녹화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를 밟도록 한다.

፟ ☑ 성폭력 아동 피해자 면담 시 유의사항

- 피해아동에게 최대한 따뜻하고 세심하게, 아이들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 면닭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중립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 적절한 상호작용과 제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의 발달 수준을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숫자나 시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미묘한 문제를 대답하고 질문을 해석 할 수 있는 성인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면담자의 신원을 밝히면서 피해 아동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만약 아동이 자기를 만나러 온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면, 아동에게 설명해준다.
- 아동에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면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 진실과 거짓 사이의 차이점을 포함해서, 면담에 대한 기초적인 규칙을 확인시킨다.
- 아동에게 그들 자신의 언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기술 하도록 요청한다
- 진술을 보조할 수 있는 종이, 펜 등의 도구를 준비하고 필요시 남녀 및 아동의 신체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 등을 준비한다.
- 항상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한다. 유도 질문은 피하고, 직접적인 질문은 개방형 질문/자유 서술이 고갈되었을 때만 사용한다. 구조적인 면담 프로토콜은 면담자의 편항을 줄이고 객관성을 유지시킨다.



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감정·상담·치료기록 첨부 및 상담원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증거불충분 으로 무혐의처리되지 않도록 한다.
- 피해자 조사 전에 해당 장애에 대한 전문가(진술분석전문가, 진술조력인, 장애인 성폭력 상담원 등)의 조언을 구하여 장애의 특성을 이해한다.
- o 수화통역자는 가능한 동성(同性)으로 한다.

™ 장애인 특성에 맞는 조사방법 활용

- 청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의사소통방법, 장애의 정도를 확인한다.
 - * 수화. 입 모양으로 읽는 것. 글로 쓰기 등
- 시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장애의 정도를 기록한다.
- 지적 장애인의 경우, 아동성폭력 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한다.
- 신체장애인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신체장애의 정도를 조사한다.
- 언어장애인의 경우 듣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반문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한다.
-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신체장애가 있을 뿐 지적 능력과 감각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피면담자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5 상담 지원

가, 개요

-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고 개입방안 의견을 제시한다.
-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충격, 죄책감, 수치심, 분노 등)의 완화와 회복을 돕고, 피해자가 적절한 대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개입을 진행한다.
- 가족 등 주변환경 체계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주위로부터 적절한 옹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상담기록지(사례접수 및 경과기록) 작성

- 상담원은 면담 시 내담자의 호소에 충분히 귀 기울이면서도 피해자, 정보제공자, 가해자, 피해에 대한 정보, 서비스욕구, 가족정보 등 필요한 핵심적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다.
 - 단, 경찰서 등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내방한 경우 반복하여 피해 내용을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조사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 피해자와 보호자가 상담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담 받도록 설득하되, 그래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경찰 등을 통해 정보를 파악한다.
- 피해일시, 발견일시,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현재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다.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외상이 보고되거나 피해가 72시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기타 증거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키트 증거채취를 위해 즉각 센터 (수탁병원)로 안내하여 지원한다.
- 사건 개요에 개괄적인 사건내용만 기재하지 말고, 피해자 내방 당시의 심리 상태나 의사검진후의 특이점을 잘 정리해 두면 재방문, 재진료 시에 참고가 되며 수사상 단서가 될 수도 있다.
- 경과기록(피해자 개별상담, 가족상담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 피해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는 상담기록지는 등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상담기록지를 경찰서 또는 NGO 등 센터 외부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 목적과 내용에 대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상담기록지는 제출 목적에 따라 원본이 아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요약된 기록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 피해자 지원

○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력 및 가족력, 기타 지원체계 등에 과한 정보를 파악하여 상담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피해자가 재피해 및 위협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 연계 및 관할 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한다.
-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급성적인 경우 피해자 또는 보호자 동의 하에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예약하여 지원한다.
- 피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자살, 공격적 행동 등 위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일 센터 및 수탁병원 응급실로 내원토록 하여 응급 지원한다.
- 고소 및 수사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처리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 진술녹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 * 잠시 눕거나 쉴 수 있도록 피해자 안정실 활용
- 피해자의 부모나 가족이 후유증이나 사법적 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하게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일 경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센터에 내원하도록 하여 위기개입 상담을 실시한다.

학교 성폭력 사건처리 시 유의사항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등〉

- 피해학생 및 보호자, 학교측이 전화로 피해사실을 상담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설득하며, 신고방법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 * 신고 접수 여부를 안내하여, 피해 상담 받은 것을 신고접수 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한다. 또한 센터 내방상담과 관련하여 본인 및 보호자 동의와 의지가 중요함을 안내한다.
- 가해자 분리 등 피해학생이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 가해자 분리 여부는 학교측에 확인해야 함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반드시 학교측에 상세히 확인한다. 가해자 분리가 안되었을 경우 즉시 분리되도록 요청한다.
 - * 학교측이 학생의 보호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중앙지원단(해바라기센터 (거점)), 관할 교육청, 관할 성폭력특별수사대, 지자체, 학교,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과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 학생의 안전(추가 성폭력이나 위협)을 파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 학교측과 협의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교사 및 학교에 요청한다.
- 심리평가 결과 불안도가 높으면 학교측과 피해학생의 추가 보호조치를 논의 한다.
-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학생 및 주변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가 미흡하였을 경우 학교측과 협의한다.
 - 학생들이 성폭력 사실을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
- 필요한 경우 학교(급)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추가 성폭력 피해(다른 피해학생 등)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측·담당 사건 수사관과 혐의한다.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시 유의사항〉

- 피해학생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
- 피해학생이 진술·상담에 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천천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
- 피해학생의 경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생기거나 자신에 대한 비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권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학교측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센터 소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자문, 현장 방문, 지역 자원연계 등을 실시한다.



7 주요 성폭력 사건의 보고 체계

- 센터장은 주요 성폭력 사건(사회적 이슈발생 등) 발생시 다음 사항을 중앙 지원단장에게 보고한다[서식 6].
 - 사건 개요, 피해자 지원 현황, 향후 계획, 피해자 지원관련 협조요청 사항 * 이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 개인이 특정될 만한 피해 사실 등은 삭제한다.
 - *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13세 미만 아동 사건, 지적 장애인 사건, 기타 의료·임상적 자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장 (거점)'에게 동시에 보고한다.
- 중앙지원단장은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지역센터 자체 해결, 단장 및 직원 현장 방문, 관련분야 전문가 파견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사건 등은 중앙지원단장과 해바라기센터장(거점)이 상호 논의)
 - 중앙지원단장은 현장방문시 해바라기센터(거점) 및 지역 센터의 치료경험이 많은 종사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센터의 장은 가급적 협조하여야 한다.
 - * 13세 미만 아동사건, 학교 등 집단 성폭력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조치한다.
 - 중앙지원단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 다른 지역센터의 종사자가 동행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중앙지원단장(해바라기센터장(거점))이 현장방문 시 피해자의 변호사, 사건 담당 수사관, 지자체 등과의 회의·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 중앙지원단장(해바라기센터장(거점))은 주요사건에 대해 개입 결정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사건의 진행경과, 피해자 지원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관련 자료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피해자 개인 정보는 제외).
- 중앙지원단장(해바라기센터장(거점))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위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 법률 지워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한국성폭력위기센터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 구조 지원
 - 구비서류 : 법률구조 신청서, 상담사실 확인서 등

☆ 무료법률구조 절차

법률구조 신청

- ◀ 직 접(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 ◄ 대리인(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사 건 조 사



◀ 사업수행기관

(민·가사사건은 화해권유 및 화해성립 시 종결)

- 소송구조 여부 결정
- ◎ 구조대상자 선정기준 : 사건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
- ◎ 우선 구조대상: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 국내에 거주 하는 외국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자 등



21

결정 1

기각결정



재판진행/ 변호활동

사건종결

- ◎ 구조수행 중지: 이미 구조를 받아 다시 구조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회정의에 심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0 배상명령제도 안내 및 활용 권유

☆ 배상명령제도

- 내용: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과정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
- 대상 범죄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등
 - 위(형법 제32장)의 죄를 가중처벌 하는 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배상명령신청 업무 대행



9 의료 지원

- ㅇ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및 진단장비 등을 이용한 증거물 채취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의료진이 피해자 진료 및 의무기록(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지원
- 성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치료 ※ 의료지원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의료비 지원 지침 참조

10 피해자 부대비용 지원(별도 예산 지원)

- 센터는 별도로 지원되는 피해자 부대비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복비, 식비,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의복비는 치료지원, 증거채취 과정에서 필요한 의복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식비는 진술녹화, 심리치료, 원거리 이동 등 피해자 지원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저소득층 등 수사·치료 과정에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하되,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비는 대중교통비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서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장애인의 경우 콜택시, 야간·응급상황, 임산부, 기타 센터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교통비는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실비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도서산간지역 및 대중교통 불가한 경우는 예외)
 - 시내 : 10,000원 이내 / 시외 : 30,000원 이내
- 피해자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등을 통해 시내 교통비는 선지원 할 수 있다.
- 자원봉사자, 종사자, 보호자 등이 피해자 수사·치료·재판 과정에서 동행 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경우 동행자 등의 교통비, 식비 등도 지원할 수 있다.
- 기타 피해자 치료·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피해자 및 가족 캠프, 심리검사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피해자 및 가족캠프 관련 예산 집행은 본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여성·이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기준의 단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1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지원

-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성폭력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공임신중절 지원을 위한 입증 여부는 종사자 등 내부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적정 여부를 결정(피해자가 인공임신중절 지원을 요청한 날로부터 최대 2주 이내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신 주수를 고려)하되 최대한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적정여부 결정 시 피해자의 상황(지적 장애 등 정신장애여부, 미성년 등)을 고려하다
 -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피해당시 13세 미만 아동(의제 강간 연령)은 별도의 고소 또는 내부 사례 회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신속하게 지원한다.
 - 센터 내부에서 즉시 수술 지원이 어려운 경우 외부 병원을 연계하되, 필요시 종사자가 동행하여 신속히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형사고소장과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가 있다고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허위 고소로 드러나면, 무고죄 피소 등 법적책임을 질 수 있고, 의료비를 화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 인공임신중절 지원 여부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피해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치되, 피해자의 신체적 위험, 건강 등을 고려한다.
- 성폭력 피해자 인공임신중절 지원 시 다음 사항을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
 - 1인 병실 등 입원비 지원 조건 완화, 부검 및 화장 비용 지원
 - 지적장애인 등 재피해 예방을 위한 피임시술 지원(피해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 수술 이후 회복에 필요한 진료와 투약 비용, 출산 결정시 출산관련 의료비
- 인공임신중절지원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다.



☞ 출산 선택 시 피해자 지원 고려 사항

- 출산관련 피해자 의료비 지원(센터 등)
- 미혼모의 경우 여성가족부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안내(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아이의 입원, 예방접종 등 병원비
 - 생필품(분유, 기저귀, 유모차, 장난감, 보행기 등)
 - 자녀양육상담, 자존감 향상 등 각종 교육,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청소년한부모가정 지원 안내
 - *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양육수당, 자립촉진 수당 등 안내
- 미혼모 시설 등 시설 지원 안내
- 기타 시·군·구를 통한 사회복지 혜택 안내

12 사례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 피해자의 연령, 성별, 가족력 기타 지원 체계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알맞은 지원(사회복귀 및 재활 지원 등) 수행
- ㅇ 보호시설 연계
 -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장애인 등),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쉼터로 연계
- ㅇ 성폭력상담소 연계
 - 거리 등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사례관리 필요시 지역 상담소 연계
-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 자원 연계
 - 여성긴급전화 1366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보듬사업(1577-9337, 성폭력 등 위기가족 심리치료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부모교육 및 상담)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1577-2514)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보호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알콜, 정신질환 등) 등



☑ 기타 피해자 지원 관련 제도 및 기관 안내

구 분	지원 내용	비고
범죄피해구조금	범죄로 인해 사망 또는 장해, 중상해 시구조금 지급 * 관련 법률개정으로 '15.4월부터 친족간 범죄도 일정 요건 충족 시구조금 신청 가능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스마일센터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진단평가, 심리 치료, 임시주거시설 지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춘천
가명조서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조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제도	해바라기센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비상호출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상 호출기를 교부하여 위급시 호출기를 누르면 경호업체 출동 및 경찰 신고 * 재판종료시까지 신청 가능 * 수감자 출소한 때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이전비 (이사실비) 지원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피해자, 신고자, 친족 등에 이사비를 지원 * 이사 후 그 소요된 비용(영수증) 청구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범죄피해자 통지제도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 사실, 출소 사실등을 통지해주는 제도 * 사건 처분결과 통지 이외에는 피해자 신청 필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피해자 임시숙소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지원 * 단기간(1~5일)의 숙박비용 지원	16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희망센터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에 대한 수사, 상담, 신변보호 종합 제공 * 여성경찰관 24시간 상주, 피해조사 * 24시간 긴급보호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700-2973)



	구 분	지원 내용	비고
긴급복	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지원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학대 받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쉼터, 일시보호, 상담, 의료 · 법률지원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아동보.	호전문기관	학대(신체, 정서, 성, 유기, 방임) 받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 쉼터보호, 심리치료, 의료 · 법률지원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생계비 등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 긴급생계비, 학자금 지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신청	
범죄 피해자 지원	간병비	피해자가 입원치료 받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생계 등의 사유로 간병이 어려운 경우 지원 *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예산 활용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피해자 구호전화 (1577-1295)
시천 	부대비용	의료보조기구, 원거리 치료 시설 이용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원 *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예산 활용	* 지원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직업 훈련비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는 경우 등에 훈련비 및 부대비용 지원	



[서식 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 청구서

* 의료기관에서 시·군·구 또는 상담소 등에 청구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접수 번호												
		 명 칭						의료기	란			
(1)			1									
 의료)구 년 소재지	<u>-</u>	릭끠해	선남의료/	世	□ 일반	: 의료기관 전화번:	- ' '			
기관		<u> - 세기</u>)작성지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			_	
		= <u>''</u> 계좌번호		 은행		(10		예금주				
			구 분		건-	È		금액			⑦ 时.	고
(2)			3합 계			건		원				
청구			<u>4</u> 일 반			<u>건</u>		<u>원</u>				
내역	のよ		신건강의학과 ^{식채취} 응급기트	사요		<u>건</u> 건		<u>원</u> 원				
		770/	<u> </u>	710			 해내역			(1	i)진료u	 귀역
	연 번	성명	8구분	생년월	일 ⑨피해일	피해시 연령	10回	해유형	진 로 개시일	로 간수	금액	응급키트 사용
(3) 치료보호 대 상 자	1		□일반 □장애인			세	성폭력 □강간 □ 가정폭력 □폭행 □ □폭행 □ □	성추행 □기타 기타		. 건	원	□여 □부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	2		□일반 □장애인			세	성폭력 □강간 □ 가정폭력 □폭행 □	성추행 □기타 기타		. 건	원	□여 □부
	3		□일반 □장애인			세	성폭력 □강간 □ 가정폭력 □폭행 □	성추행 □기타 기타		. 건	원	□여 □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치료보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치료보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②첨 부 □ 치료보호대상자 명단 1부. □ 진료비 명세서 ()매. □ 상담사실 확인서 ()매. □ 신고접수증 사본 ()매. □ ()매. □ ()매. □ ()매.												
			청-	구일자	:	년	월	일				
			①청	구 인	:			(*	년명 <u>5</u>	또는 날약	인)	
(H) (B)) .	시장・	군수・구천		하 귀하					



〈작성요령〉

- 1. 서식명의 □성폭력, □가정폭력 중 해당 항목에 "♬" 표시한다.
- 2. ※란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한다.
- 3. "①구분"란의 해당 항목에 "↓" 표시한다.
 - '성폭력피해 전담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일반의료기관 기타'에 "♬"표시한다.
- 4. "(1)의료기관"의 "②작성자"란에는 청구서를 직접 작성한 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 5. "(2)청구내역"은 '건수'와 '금액' 모두 "③합계=④+⑤+⑥"이 되도록 한다. "⑥성폭력응급 키트 사용"처치료는 2004년 10월 1일 사용분부터 청구하고, "⑦비고"란에 청구내역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 6. "(3)치료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에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⑧구분" 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한다.
- 7. "(3)치료보호대상자"의 '피해내역'에 피해를 입은 날짜("⑨피해일")와 피해시 연령을 기재하고 "⑩피해유형"의 해당 항목에 "▽"표시한다.
 -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상담소 등 시설의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 · 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 군 피해자의 경우 법무·헌병, 또는 여성정책계선이 확인한 성폭력 신고 확인증으로도 증빙 가능
 - "⑨피해일"란의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년월까지만 기재한다.
- 8. "⑪진료내역"란의 '진료개시일'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은 날을, '응급 키트 사용'란에는 응급키트 사용여부에 "☑"표시한다.
 - 치료보호대상자 개인별 '건수'와 '금액'은 그 합계가 '(2)청구내역'의 "③합계"와 일치 하여야 하다
- 9.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⑥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청구내역, ⑩피해유형, ⑪진료 내역 '응급키트 사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 10. "⑫첨부"란에는 해당하는 첨부물 항목에 "√"표시하고, 진료비명세서와 확인서 등의 매수를 표시한다. 통장 사본 등의 별도 첨부물이 있는 경우, 빈칸에 목록과 매수를 기재하고 "√"표시한다.
- 11. "③첫구인"란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 12. 시·군·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⑭에 "♥"표시하고, 상담소 등 시설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⑮에 "♥"표시하고 빈칸에 기관 명칭을 기재한다.



[서식 2]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 지급 신청서

* 피해자 본인(대리인)이 지불한 치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접수 번호												
	성명			①구분 □일반 □장이		□장애인	,	생년월일				
치료보호	주소								2	전화번호		
대상자 (피해자)	③피해일			4) 到	해시연령	세	5	피해유형		◆ 성폭력 □ 강간 □ 성추행 □ 기타 ◆ 가정폭력 : □ 폭행 □ 기타		
대리인	성명			생기	년월일				6)피해자와	의관계	
(대리인이 있는 경우)	주소								₹	헌화번호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⑦청구총액						세	부내역				
	08184	연번	의료기	관명	⑧진	료과목		진료일		⑨금액	1 0 н)	고(치료내용)
		1			□신 □정신건강	}부인과 의학과 □7	타	20		원	!	
청구내역		2			□ 신 □ 정신건강:	}부인과 의학과 □7	[타	20		원	!	
	원	. 3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기타 ⁴			20	. 원		1	
		4] - - - - - - - - - - - - - - - - - - -	 타	20		9	1	
		5					타	20		0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치료보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치료보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 집료비 영수증 ()매. 2) □ 상담사실 확인서 1매. 3) □ 신고접수증 사본 1매. 4) □ ()매.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있는 경우) : (서명 또는 날인)												
	() 시경	} • 군	수・구청	장 귀히)장 ⁼						



〈작성요령〉

- 1. 서식명의 □성폭력, □가정폭력 중 해당 항목에 "√" 표시한다.
- 2. ※란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한다.
- 3. "① 구분"란의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② 전화번호"는 실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4. ③, ④에는 피해를 입은 날짜와 연령을 기재하고, "⑤ 피해유형"의 해당항목에 "▽"표시 한다.
- 5.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기입하고, "⑥피해자와의 관계"란에 '부', '모', '담당 경찰관' 등으로 기재한다.
- 6. "⑦ 청구총액"은 "⑨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7. "⑧ 진료과목"은 해당항목에 "▽ "표시하고, "⑩ 비고"란에는 진료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한다.
- 8.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⑤ 피해유형, ⑧ 진료과목은 기재하지 않는다.
- 9. "⑪첨부"란의 해당하는 첨부물에 "♥"표시하고, 매수 등을 기입한다.



[서식 3] 경찰관 작성

확 인 서

치료보호대상자 성 명: 생년 월일:

상기 인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의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고소(진정)인 임을 확인합니다.

고소(진정)일: 년 월 일

고소(진정)내용 피 해 일: 년 월 일

피 해 유 형 : □강간 □성추행 □기타

(※가정폭력피해자는 '피해유형' 작성 불필요)

피해내용:

확 인 자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신청 번호 : -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인적사항 (경제적 상황)

구조 필요성에

관한의견

추천 변호사



[서식 4]

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 신청

(상담/기록 검토 배당: 당사자는 기재하지 말 것)

센터등록번호							
	기관명		상담자				
신청인	주소						
건경립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기관명		상담자				
사건 당사자	주소						
(신청인과 다른 경우)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건의 종류	민사 (본안·집행)·가사 사건의 대리 / 형사 고소 대리 / 형사 변호 / 기타						

※ 첨부서류 : 1 성폭	력 상담사실 확인서(상담	Ć·시설) / 진단서 / .	고소장 사본 · 접수증 중 1

20 . . .

(여성인권과의 관련성 및 피해자의 경제 상황)

위 신청인 ①



[서식 5]

상담사실 확인서

내담자	성 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 소						
	일 시						
	상담자						
상담 내용	피해 상황 및 상담 내용	(피해상황, 가해자 정보, 및 내담자의 주호소문제 등을 기술)					
비고							
\\\\\\\\\\\\\\\\\\\\\\\\\\\\\\\\\\\\\\		(은) 본 센터에서 위와 같이 상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기관 (기관인)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 6]

성폭력 사건 보고

	수신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장 거점기능 센터장			발신			○○센터장			
구분	작성: (직위/ ²			()	1		작성일시					
	피해일	·		센터 접수일			피해자수	ם	병 연령		학생여부 (√)	
피해내용	피해장소 가해자] 작성(구	¹ 체적	장소는 ()()	가능)			
	진술:	녹화 일시			전문가 의견조회 일시							
	국선변호	사 연계 '	일시	진술조력인 연계 여부 및 일시								
지원 현황	지원 내용 기술(상담, 수사, 법률 등)											
의료·임상	지원	면 현황		의료/임선	상 관련 >	지원	현황					
지원 현황	소견 및	면 및 특이사항 심리평가 결과										
피해자지원 협조 요청사항	중앙지원	시원단 및 거점기능 센터 협조사항										
향후계획												



II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등 의료ㆍ심리 상담지원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가. 목적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파악한다.
- ㅇ 성폭력 사건의 가능성에 대해 1차 평가를 실시한다.
- 경과 관찰, 치료적 성교육, 심리평가 및 약물치료, 입원 치료 등을 결정한다.
- 부모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

나. 일반 절차

- 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ㅇ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과정은 법적 증거 및 객관적 자료로 확보한다.
- ㅇ 통합진료와 별개로 치료 및 약물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진을 계획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의 결과에 따라 심리평가, 약물치료, 입원치료, 심리 치료(치료적 성교육, 단기 및 장기 치료), 경과 관찰 등의 처방을 내린다.

1 심리평가 결정

- 치료 및 법적 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해 가능성 및 후유증 평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평가를 결정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심리평가 일정을 예약한다.

2 약물치료

- 세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시는 수탁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하여 약물을 처방하다
- 간호시는 약물 처방 절치를 지원하고 약의 작용 및 부작용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해 준다.
- 아동·청소년의 상태에 따라 진료일정을 조절하고 다음 예약일을 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위하여 근거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다.



③ 인워치료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급성스트레스 증상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증상을 보이거나 자살이나 공격적 행동 등 위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 입원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 수탁병원 및 연계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도록 한다.
- 간호사는 입원 절차를 지원하고 입원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의 상태를 점검하고 호전 상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입원 중인 경우라도 법적 지원을 위하여 심리평가는 평가가 가능한 센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혐의·조정한다

4 심리치료(치료적 성교육, 단기 또는 장기 심리치료)

-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등에 의한 단기 또는 장기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료 중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나 또래간의 가벼운 성적 놀이 등이 보고되었으나 심리적 후유증이 경미하며 법적 진행 가능성이 없고, 적절한 성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 실시한다.
- 재발방지 및 치료적 성교육을 실시한다.

5 경과 관찰 및 서비스 종결

- 아동·청소년의 상태 및 필요한 대처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없거나 가벼운 성적 자극의 노출 및 성적 놀이 등이 보고되나 후유증상이 없는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2 신체 외상 및 산부인과 진료

가. 신체 외상 진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는 면담 및 검사를 통하여 아동의 외상 가능성을 파악하여 외상 진료를 진행한다.
- 외상의 정도에 따라 수탁병원 진료과(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항문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연락하여 아동 도착시간을 알려주고, 센터 전담 간호사가 동행한다.



- 0 간호사는 접수 등의 진료 과정을 지원한다.
- 외상 진료를 통해 필요한 증거채취를 실시한다.
 -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 시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한다.
 - 피해자 사전 동의 후 사진 촬영 등 증거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 간호사는 외상 진료 시 동석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의료진과 아동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정확한 정보수집과 진료에 도움을 준다.
- 간호사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외상 진료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교육을 실시한다.

나. 산부인과 진료

-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진료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아동에게는 연령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한다.
- 담당의사와 함께 시진(외음부의 열상, 발적, 처녀막의 손상, 출혈유무 등)을 한다.
- 시진 후 사진촬영에 대한 보호자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은 후 사진 촬영을 한다.
- 질 분비물을 채취하여 정충 유무, 성병 여부, 감염유무 검사를 실시한다.
-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에 대해 설명해준다.
- 기타 아동·청소년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있으면 안내하고 약물 처방 등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잘 복용하도록 한다.
- 임신예방과 관리: 생리를 시작했거나 신체발육의 정도가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임신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임신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임신검사 및 처치 : 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하고 임신예방을 위해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여 복용하도록 하고, 약물 복용법과 약리작용을 설명해준다.
 - 임신인 경우: 보호자를 포함하여 적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검사결과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외상에 따른 추후 진료를 실시하며 성병 잠복기간 6~9개월 동안 혈액검사를 실시하다.

☆ 초기 사례회의

- 접수 면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외상 진료 등의 1차 평가 과정의 결과들을 공유하여 향후 지원 방향을 점검한다.
- 내담자의 특성 및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례 지원 내용을 결정한다.

3 심리 평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또는 센터 사례회의 결과 심리적 후유증 및 피해 가능성과 관련한 종합적 심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에 실시한다.
 - 법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초기 사례회의를 통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앞서 실시될 수 있다.
 - 심리평가는 임상심리전문가(이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을 포함한다) 및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임상심리사에 의해 실시된다.
- 심리평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현재 심리상태 및 적응 수준
 - 아동·청소년의 현재 심리상태와 성폭력 사건과의 관련성
 - 피해 이전의 아동·청소년의 성격 특성 및 적응 수준
 - 정신의학적 진단 및 치료적 제언
 - 주 양육자의 사건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반응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처행동
- 심리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시행한다.
 -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평가자가 면대면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후 보호자를 따로 만나 면담한다.

- 특히, 아동이 강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보호자와의 분리에 저항한다면,
 보호자의 동석을 허용하되, 평가의 대상이 아동임을 설명하여, 보호자가
 부적절하게 검사 도중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심리평가는 일반적인 종합심리평가의 실시 지침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태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평가 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배려해야만 하고 정서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 평가 도중에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사건을 자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이 일에 대한 개방적인 탐색은 할 수 있으나 유도질문은 삼간다.
- 평가 도중에 아동·청소년이 재경험, 해리, 공포 등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심각하게 드러낸다면, 평가를 중지하고 응급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평가를 이어서 할 수 있다.
- 이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는 일반적인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작성과 동일하다.
 - 가급적 아동·청소년의 현 적응 수준과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기 이전의 적응 수준을 구분해서 기술해야 한다.
 - 증상의 심각도 또한 기술해야 한다.
 - * 증상의 심각도는 DSM-5(또는 DSM-4) 진단기준 등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심각도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고려하되 심리평가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약물치료와 입원치료의 필요성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폭력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아동·청소년이 현재 혹은 과거에 보인 문제들이 피해와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것도 기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보호자의 검사 결과와 각종 척도의 채점 결과표는 별첨 형식으로 작성하며, 수사·법률적인 용도로 보고서를 제출할 시에는 보호자의 결과 및 채점표, 원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4 종합사례회의 및 통합진료·상담

가. 종합사례 회의

- 접수 면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산부인과 진료, 심리평가의 내용을 토대로 모든 팀이 함께 종합사례 회의를 실시한다.
 - 종합사례 회의를 통하여 이전까지의 서비스 지원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치료 지원, 법적 지원, 사회적 지원 등 전반적인 개입 계획을 세운다.
 -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법적 지원 상황, 정신건강의학과 및 산부인과 진료결과, 심리평가 결과를 각 팀이 논의한다.
 - 진료 및 평가 결과들을 종합하여 피해 가능성에 대한 사례 평가를 실시한다.
- 정기적으로 사례회의 시간을 정하여 그간의 내용들을 논의한다.(주 1회를 워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혐의 하에 주기를 정할 수 있다).
- 응급사례인 경우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개입 방안을 논의한다.
- 종합사례회의 결과는 통합진료상담, 심리치료 및 이후 법적 지원에 반영 한다.

나. 통합 진료 및 상담

- 심리평가, 종합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임상 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가 아동·청소년의 심리상태와 향후 치료 계획을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 * (소아)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보호자에게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약물치료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논의를 거쳐 센터 수탁병원으로 연계 한다. 단,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역 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 성폭력 피해 사례가 아니거나 성폭력 피해 후유증이 경미한 경우 부모교육 후 종결하며 차후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아동·청소년의 심리상태에 따른 부모의 대처방안을 교육한다.



5 심리 치료

가. 목적

- o 성폭력 피해 관련 후유증을 감소시킨다.
- 성폭력 피해 후 처리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
-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교정하고 자기 보호 능력을 향상시킨다.
-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적응력 향상을 도모한다.

나. 심리치료자

- 정신병리 및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적 교육 및 수련과정을 이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등이 실시한다.
- 심리치료를 맡은 사람은 정기적인 슈퍼비전 및 사례회의를 통하여 심리 치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다. 일반적 절차

- 통합진료 및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를 계획·실시한다.
- 센터 내 치료는 순서대로 대기하며,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치료를 개시할 수 있다.
- 치료자는 심리치료 시작 시 아동·청소년 및 부모와 심리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한다.
 - 성폭력 피해 후유증과 관련한 증상들을 확인하고, 호전 가능한 종결 준거를 설정한다.
 - 성폭력 피해 이전의 아동·청소년의 적응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을 논의하고, 부모가 아동·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안내하고 조언한다.



- 계획된 치료 접근 방법에 대해 치료 초기에 부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 ㅇ 심리치료 목표 및 종결 준거에 따라 치료를 종결한다.
 - 종결 계획을 전체 사례회의에서 논의한다.
 - 치료의 종결은 아동·청소년 및 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종결 시 필요한 사후 평가 및 심리치료 만족도 설문지를 실시한다.
 - 추후 치료 회기를 계획한다.
- 심리 치료 종결 후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및 성폭력 상담소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심리치료 종결의 준거

- 치료 초기 부모설문지와 부모면담을 통하여 파악한 주된 호소문제와 치료에서 기대하는 바등에 대해 부모와 논의하여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증상 호전을 중심으로 치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 학령기 아동의 경우, 치료 초기 아동과도 주된 호소문제를 확인하며 구체적인 치료 목표를 함께 설정하며,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종결을 계획한다.
- 치료 종결 기준은 초기 면담시 보고된 성폭력 피해 관련 후유증이 호전되었다는 것에 대해 아동·청소년과 부모, 치료자가 동의했을 경우로 한다.
- 이전의 적응 문제와 성폭력 피해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치료 초기, 치료 목표 및 종결준거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 ㅇ 부모 교육
 - 아동·청소년 및 부모의 심리적 후유증이 경미한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피해자 부모로서 필요한 양육행동 및 자제해야 할 행동, 치료적 성교육과 재발예방교육의 방법·태도와 관련된 교육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통합진료를 할 경우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센터에서 추가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ㅇ 부모 상담

- 심리치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을 병행한다.
-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상태 및 성폭력 피해와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치료과정에 대해 교육한다.
-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부모의 대처 방안을 상담한다.
- ㅇ 부모 및 가족 심리치료
 - 성폭력 피해로 인해 부모 및 형제자매가 심리적 후유증을 크게 겪고 있는 경우 개별 심리 치료를 실시하며, 이는 통합진료 시 1차적으로 결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심리치료 진행 중 필요시 부모 및 가족의 개별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마. 치료 지워 범위

-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이외의 부모자녀관계나 기질적 문제가 있는 경우 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후유증 치료 후 자비부담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이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이전부터 있어왔고, 만성적인 경우 자비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한다.
- o 이 경우 치료 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지는 않으나 추천해줄 수는 있다.
- 치료를 받게 되는 기관이나 병원에서 공식적(공문 및 요청서류)으로 진료기록 및 평가보고서를 요청할 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요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근거리 치료 기관 연계

가. 목적

ㅇ 보호자 동반이 어렵거나 거리상의 이유로 치료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

나. 근거리 치료를 원하는 경우

-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센터의 사례 개입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가까운 센터 치료를 권유한다.
- 부모가 동행은 가능하나 거리상의 이유로 센터의 치료 중단을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아동 전문 치료 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연계 가능한 기관은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또는 가급적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치료기관이 드문 지역의 경우 여건을 감안한다.
 - 치료 연계 병원은 센터에서 지정하지 않으나, 센터에서 아동 주거지의 근거리에 위치한 기관을 소개할 수는 있다.
 - 새로운 병원으로 연계 시 센터 담당자는 기관장과 통화하여 센터 소개, 연계 아동의 심리 상태, 연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계 절차 및 방식에 대해 합의한다.
 - 치료비용은 별도의 예산으로 교부되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지원한다.
 - 의료비 지원 범위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 따르되,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연계된 병원의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는다.



7 동행서비스의 제공(별도 예산지원 센터만 해당)

가. 목적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지적 장애인의 서비스 및 치료 지원
 - ※ 치료를 위한 동행 이외의 문화(영화, 캠프 활동 등), 교육, 수사(센터 진술녹화) 동행, 기타 귀가 동행 등 적극 지원

나, 서비스 지워 대상

- 보호자의 여건(한부모, 조손, 맞벌이 등)으로 서비스(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 ※ 기타 센터의 판단으로 19세 미만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신체 장애인 등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 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족과 거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능
- 동행서비스 지원을 받는 피해자의 보호자는 필요 시 센터가 보호자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동행서비스의 방법

- 자원봉사자 활용
 - 자원봉사자 인력을 모집하여 교육 후 피해자에게 동행서비스를 제공함. 이 경우 자원봉사자 관리·교육·슈퍼비전, 동행서비스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 ㅇ 유급 시간제 인력 활용
 - 상담 등 경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유급 시간제 상담·동행인력으로 확보하여 지역별 피해자를 전담하여 동행서비스를 제공
 - ※ 유급 시간제 인력에게 교육과 슈퍼비전을 실시해야 함



- 차량 활용
 - 도서, 산간 또는 지역별로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 (lease)하여 동행서비스를 제공함
 - ※ 이 경우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또는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함
- 찾아가는 치료·상담서비스
 -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종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상담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
 - ※ 이 경우 치료·상담 전문인력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지역의 적정한 치료지원 단가 적용)
 - ※ 종사자에게는 출장여비, 수당(3만원 이내)을 지원할 수 있음(출장여비는 운영비 예산으로 지원 가능)

라. 자원봉사자의 자격 요건

- ㅇ 미성년자가 아닐 것, 관련 범죄전력이 없을 것
- ㅇ 아래 요건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일 것
 - 자워봉사센터 등에 등록되어 관련 자워봉사 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 아동학, 보육학 등 관련학과 대학(원)생
 - 보육교사, 상담 등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마. 자원봉사자 등의 교육

- 자원봉사자 및 유급시간제 인력은 센터에서 별도의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함
- 교육은 자원봉사이론, 성폭력 피해아동·가족의 특성 이해, 개인정보 보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하여야 함(최소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함)



바.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 등의 동행서비스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은 동행서비스 예산 또는 피해자 부대비용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실비) 외 일비(하루 2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되는 시간·거리 등을 감안하여 최대 7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음
- 유급시간제 인력은 근무일수, 시간 등을 감안하여 센터에서 별도로 사례비를 정함
-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상해보험 가입, 자동차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 자동차 보험 가입 지원은 자원봉사자 등이 본인 또는 가족의 차량으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매월 2회 이상 또는 연간 30회 이상 지원한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자동차 사고 시 피해 아동 등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 보험에 한함)
- 취약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영화, 연극, 여가활동) 동행 등 제반 동행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는 피해자 부대비용에서 지원할 수 있음

사. 동행서비스 상근 전담인력의 채용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채용
 - ※ 제4장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에서 종사자의 자격요건 내용 참조



8 법적 지원

가. 법률 상담

- 센터 서비스 지원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 피해 아동·청소년 부모가 고소를 결정하거나 소송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전문적인 법률상담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자문변호사, 피해자국선변호사 등에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수사 재판 지원

- 0 신고과정 지원
- 0 수사지원
 -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의 소견 또는 의견이 요구되는 경우, 소견서나 의견서를 제출한다.
 - 센터 수탁병원의 진료를 받은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법적 자료로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 0 재판지원
 - 재판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자가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한다.
 - 재판정에서 증인출석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하여 증언한다.
 - 재판 과정에서도 역시 필요한 문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 불가피하게 아동·청소년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하게 될 경우나 부모가 증인으로 출두하게 될 경우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법정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심리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정 지원을 실시한다.



9 사회적 지원

가. 사례 지원

- 0 사례관리
 - 평가, 치료, 법적 지원 서비스 등이 피해 아동·청소년 및 부모가 처한 심리· 사회적 환경과 욕구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 목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ᅠ ☆ 사례관리

- 1. 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목표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특정한 사례들은 가능하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1명의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 2. 사례관리를 권장하는 사건들
 - 1) 친족 내 성폭력 사례
 - : 복잡하고 미묘한 가족 관계에 대한 개입 및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쉽지 않은 사례이다.
 - 2)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
 - : 피해가 발생한 기관 담당자와 보호자의 갈등이 피해 아동의 평가와 치료를 방해한다.
 - 3)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보호자 사례
 - : 피해 경험이 있는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4) 여러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사례
 - : 피해자·보호자와의 신뢰 형성이 쉽지 않고, 향후 평가와 치료의 지속이 어렵다.
- 정보 제공 및 부모 교육
 - 각 사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은 센터의 서비스 진행절차 및 법적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에게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교육한다.
- 부모상담 및 가족상담
 -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후 부모가 문제해결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 및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지지하고, 문제해결 방식 및 자원 탐색에 대해 상담한다. 필요시 가족상담을 실시한다.



- ㅇ 부모 자조 모임
 - 피해 아동·청소년의 가족들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심리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모모임을 구성, 지원한다.

나. 환경적 개입 및 지역사회 연계

- ㅇ 보호시설 연계
 - 친족관계의 가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분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비 가해 부모와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쉼터로 연계할 수 있다.
- o 학교문제 지원
 - 성폭력 피해가 학교 내 교사, 동급생, 선후배에 의해 발생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그 학교에 다니기 원하지 않거나, 지속된 성폭력 피해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측이나 교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다.
-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 연계
 - 방과 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재피해 및 부적응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다.

10 종결 및 사후관리

- 전반적인 치료적 지원 및 법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 센터 서비스 종결 후 담당 사례관리자가 전화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경과를 확인한다.
 - 센터 서비스 종결 후,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후유증으로 아동·청소년의 적응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다시 센터에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종결 시점에 지원 대상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후 피드백 자료로 활용한다.



정기적인 종합사례회의 시간 중 치료 지원, 법적 지원, 사회적 지원이 종결되는 시점에 지원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결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의 내적, 외적 자원들(강점, 취약점 등)을 검토하고 재피해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향후 사례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1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 대처

- 센터의 장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는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센터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rm I\hspace{-.1em}I}$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

지워 대상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 2 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재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간의 폭력은 해당하지 않음)

-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모욕, 명예훼손, 주거·신체수색,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강요, 공갈, 재물손괴
- 위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죄
 -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
 - ※ 단, 가해자와 피해자(18세 미만)가 가정구성원 관계인 경우에 한함

2

접 수

- 직접 센터를 방문한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 된 가정폭력사건(가정구성원간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 한다) 중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또는 담당 경찰관이 인계한 경우
-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한 경우
-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NGO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

²⁾ 적모: 서자가 아버지의 정실을 일컫는 말.

³⁾ 이 법에 의해 특별절차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아니고, 제2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포함되는 범죄를 말함.



3 수사 지원

- 화경조사서 작성[서식 7]
- ㅇ 진술녹화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 경찰서에서 이중조사를 받지 않도록 동의 시 진술녹화 실시
 - * 외상 사진 촬영 및 진단서 발부 등 물적 증거 확보에 노력
 - '가정보호사건 처리'4)를 희망하는지 질문 후 조서 상에 기록
 - *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형사절차 처리
 - * 보호처분(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불이행시, 형사입건(법 제6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가정폭력범죄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 수사절차 안내
 - 경찰관의 신청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또는 주거·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
 - * 긴급임시조치(경찰관): 격리 또는 접근금지(우편,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포함)
 - * 임시조치(법원결정) : 격리 또는 접근금지 위반하는 경우,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능
 - 가정폭력 특성상 상습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폭력행위 재발 시 해바라기 센터 또는 112신고 등 대처요령 안내
- 피해자 조사 후 사건을 관할경찰서로 인계,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에 의한 신속처리
- ㅇ 아동학대사건의 수사지원 범위
 - 가정구성원간 아동학대사건 중 중상해, 상습, 기관고발 사건(상습 의심)
 - 가정구성원간 아동학대사건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저연령(13세 미만)·의사소통 지장(장애 또는 장애의심 등) 사유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학대사건
 - * 이 경우 센터 피해자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위한 시설과 장소만 제공함

⁴⁾ 형벌이 부과되는 일반형사절차와 달리, 가해자가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 처리방식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 수사절차 안내
 - 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또는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
 - * 임시조치의 종류: ①퇴거 등 격리, ②주거·학교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③전기 통신 이용 접근금지, ④친권 또는 후견권 행사의 제한·정지, ⑤상담위탁, ⑥의료기관 위탁, ⑦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등 지원제도를 설명
 - * 아동보호사건: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성행· 개선가능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종결 가능
 - * 피해아동보호명령: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가정법원(미설치 지역은 지방법원)에 청구
- 피해자 조사 후 사건을 관할경찰서로 인계,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의한 신속처리

図 가정폭력 중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유의사항

- 학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음을 감안하여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대한 세심하게 지원
- 피해아동 등의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피해아동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유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피해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연계하여 지원
-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2014.9월)을 반드시 참조



4 사건 조사 시 행동 요령

- 가정폭력 사건 접수 시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 여청계 『가정폭력 상담관』 에게 부보 1부를 교부·통보하다
 - * 가정폭력 상담관은 사건 접수 시 및 사건 발생 1~3개월 후 피해자 안내 서비스 실시
- o 가정폭력범죄는 재발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한다.
- 피해자 조사 전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피해자 심리상태를 고려, 피해자 조사는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한다.
- 피해자를 탓하거나 모욕·굴욕감을 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과거 폭행사실이나 자녀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 ㅇ 피해자에게 가정보호사건 처리 희망 여부를 묻는다.
- 피해자에게 사법경찰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퇴거,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임시조치를 신청한다.
 - * 임시조치 신청시는 임시조치신청부에 기재하고,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 일시,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
 - → 임시조치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을 시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 수사기록 등본 관할 검찰청 송부
- 보호처분 등 심리자료를 위해 가정환경, 원인 및 결과, 재발가능성 등을 기록한다.
- 피해자 조사 시,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범죄를 미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ㅇ 귀가조치 시, 가정폭력 재발시 강력 처벌을 경고하고 시차를 두고 귀가시킨다.
- 상담소의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의 소견서를 받거나 상담원을 상대로 조사 하다
- 경찰서로 인계 시,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한 후 가정보호사건 처리에 관한 의격을 제시한다.



- O 피해여성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관내 NGO와 연계토록 한다.
-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 가해자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의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5 상담 지원

가. 상담 및 상담기록지 작성

- ㅇ 피해자의 심리상태 파악
 - 필요시 심리적 불안 해소 등을 위해 피해자 안정실에서 충분한 안정을 취한 후 차분한 상태에서 상담 실시
-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충분히 이해하는 자세로 상담
- 피해자의 생활·태도에 대한 평가성 발언이나 가해자 입장을 동조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엄금
- 필요시 NGO 연계, 1366센터(☎1366),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쉼터 등 안내
-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통역을 통해 확인하며 다누리 콜센터(☎1577-1366) 이용 안내 혹은 가정폭력상담소로 연계
- ㅇ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지원
 - 사건처리과정 및 가정보호사건으로서의 처리절차 등 설명

♡ 상담 시 유의사항

- 피해자가 수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도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신중한 결정 유도
- 내담자에게 신고와 이혼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징역· 벌금·구류 등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
-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차후에라도 가해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차후 고소에 대비하여 관련 목격자를 확인하고 물적 증거를 보관하도록 안내
 -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상담기록지 작성(p.29 참조)



6 의료 지원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로 구성된 전담 의료진이 24시간대기,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지원
 - * 치료비 청구 및 절차 : 2016년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안내 참조
- 센터 진료 후 의료비용은 의료기관이나 센터 소재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 자치단체장은 치료비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7 구상권의 행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로서, 시·군·구에서는 구상권 행사 이유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시·군·구청장은 가정폭력행위자 명단을 관리하고 구상권(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을 행사하되 다음의 경우 구상권 행사 불가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항〉

-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
-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의 수급자인 경우
-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 연간 피해자 1인 의료비 지원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가정폭력행위자가 전출시, 전출지 시·군·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관계서류 일체 이송
- 구상권은 지방채권으로 관리하며, 지방재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



○ 참고 : 가정폭력 무료진료 또는 의료비 감면 혜택 대상 기관(지방의료원)

의료원명	병원대표전화	의 료 원 주 소
서 울	02-2276-7000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부 산	051-507-3000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대 구	053-560-7575	대구 서구 평리로 157
인 천	032-580-6000	인천 동구 방축로 217
경기도의료원 수 원	031-257-414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의 정 부	031-828-5000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경기도의료원 안 성	031-674-7520	경기 안성시 고수2로 17
경기도의료원 이 천	031-639-4800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경기도의료원 파 주	031-940-9100	경기 파주시 중앙로 207
경기도의료원 포 천	031-539-9114	경기 포천군 포천로 1648
원 주	033-760-4500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7
강 릉	033-646-6910	강원 강릉시 경강로 2007
속 초	033-630-6000	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영 월	033-370-9101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삼 척	033-572-1141	강원 삼척시 오십천로 418
청 주	043-279-0114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의	료원명	병원대표전화	의 료 원 주 소
충	주	043-841-0114	충북 충주시 사직산21길 34 (문화동)
천	안	041-570-72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공	주	041-855-4111	충남 공주시 웅진로 130
<u></u>	성	041-630-611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서	산	041-689-7000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
군	산	063-472-5000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27
남	원	063-620-1114	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
순	천	061-759-9114	전남 순천시 서문성터길 2
강	진	061-433-2167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목	포	061-260-6500	전남 목포시 이로로 18
王	ठो	054-247-0551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안	사	054-850-6000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김	천	054-432-8901	경북 김천시 모암길 24
울	진	054-785-7015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마	산	055-249-1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제	주	064-720-2222	제주 제주시 산천단남길 10
서	귀 포	064-730-3106	제주 서귀포시 장수로 47



8 법률지원 및 NGO 연계

- ㅇ 법률구조기관을 통하여 무료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지원
 - *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법률구조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 위탁하고 있음(무료법률구조지원 참조)
- ㅇ 배상신청 절차 지원
 - 피해자가 부양에 필요한 비용 및 치료비·물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신청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법원에 신청) 지원
 - *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배상명령 결정
- ㅇ 피해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동의하는 경우,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 등에 인도
 - * '응급조치 보고서'에 기재[서식 8]
- 치료 및 상담전문기관 연계
 - 피해자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



9 참고: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연계 절차

가.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장출입 조사

- 현장출동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상태 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 시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 신고 접수시 지체없이 현장출동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소속 상담원의 현장동행 요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14.1.31시행)
- 현장조사 거부 · 기피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14.1.31시행)



응급조치 (법 제5조) • 현장 출동한 사법경찰관 즉시 조치

1호 : 폭력행위 제지 수사, 2호 :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동의시)

* 작성서류 : 응급조치 보고서

3호 : 치료기관 인도,



긴급임시 조치 (법 제8조 및

제29조)

• 가정폭력 재범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시법경찰관

직권으로 결정

1호 : 퇴거 등 격리 2호 : 주거·직장 100m 접근금지

4호 :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3호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작성서류 : 기급임시조치결정서, 기급임시조치확인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임시조치 (법 제8조 및 제29조) • 검사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 청구

1호 : 퇴거 등 격리. 2호 : 주거. 직장 100m 접근금지

3호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 의료기관 등 위탁 5호 : 유치장, 구치소 등 유치(1~3호 위반 시 신청가능)

* 작성서류 : 임시조치신청서(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첨부)



가정보호사건 또는 일반형사 사건 송치 (법 제7조)

- 가정보호사건, 송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관할 : 가정법원
- 징역·벌금 등 형사제재가 이닌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치료 위탁, 감호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
- 일반형사사건 송치(형법)
 - 일반형사사건과 동일 절차로 진행



나. 가정폭력 관련 적용 법규 등

○ 응급조치(112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할 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법 제5조)

-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 필요)
- 3 기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4. 폭력행위의 재발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 응급조치를 취한 경우 응급조치보고서 작성
- ㅇ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법 제8조의2)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 결정

- 1. 피해자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주거 ·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1~3호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 ※ 위반 확인 시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작성, 관할 법원에 통보(팩스 가능)
- 임시조치(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29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 제1호 : 피해자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제2호 : 피해자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제3호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제4호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위탁(판사의 직권만 가능)
- 제5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1호~제3호 위반시 신청 가능)
 - → 제1호~제3호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 ※ 위반 확인시 위반자 통보서 작성,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통보(팩스가능)
 - → 임시조치 기간
 - 제1~3호 : 2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 최장 6월)
 - 제4~5호 : 1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장 2월)



ㅇ 고소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특례(법 제6조)

-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행한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한다.
- 가정보호사건 처리(송치 시 가정보호사건 의견 표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에게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관할 : 가정법원)
- ▶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능
 - ※ 보호처분 결정(동법 제40조) : 접근행위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등 상담위탁
- o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상 특례

절차상 특례

- 공소시효의 정지(법 제17조)
 - ① 가정폭력의 공소시효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하여 제37조 1항 1호⁵⁾ · 2호⁶⁾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27조제2항⁷⁾ · 제37조제2항⁸⁾ 및 제46조⁹⁾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부터 진행함

⁵⁾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소되거나 처벌불워의사를 명시적 표시한 경우

⁶⁾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⁷⁾ 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인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때

⁸⁾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아 검사 또는 법원에게 송치·이송한 때

⁹⁾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보호처분을 취소하여 관할 검사나 법원에게 송치·이송한 때



절차상 특례

- ② 전항에 의한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 미침
- 구속영장 효력의 상실(법 제13조)
 - 검사·법원이 가정폭력 구속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때에는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은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부터 상실
- 비밀엄수 등의 의무¹⁰⁾(법 제18조)
 - ① 가정폭력 수사 및 가정보호사건 심리 등 담당공무원 및 상담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②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피해자·신고인 등의 주소, 연령 등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금지
 - ③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아동의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취학·전학·입소 등의 사실을 누구(친권자 포함)에게든지 누설 금지
- 심리의 비공개(법 제32조)
 - 판사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심리 비공개할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은 판사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권 부여
- 피해자의 진술권 등(법 제33조, 제46조)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 가해자의 보호처분 불이행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보호처분 취소방법 마련
- 배상신청(법 제56조) 보호처분시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지급·배상을 함께 명령

¹⁰⁾ 동조 1항위반 상담원등은 1년이하징역이나 2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항위반 편집인 등은 500만원 이하 벌금(법 64조)



O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법 제55조의2)

- 개념 :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피해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이 내용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우편,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ㅇ 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단위 연장가능(2년 이내)

- *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적으로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

ㅇ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법 제55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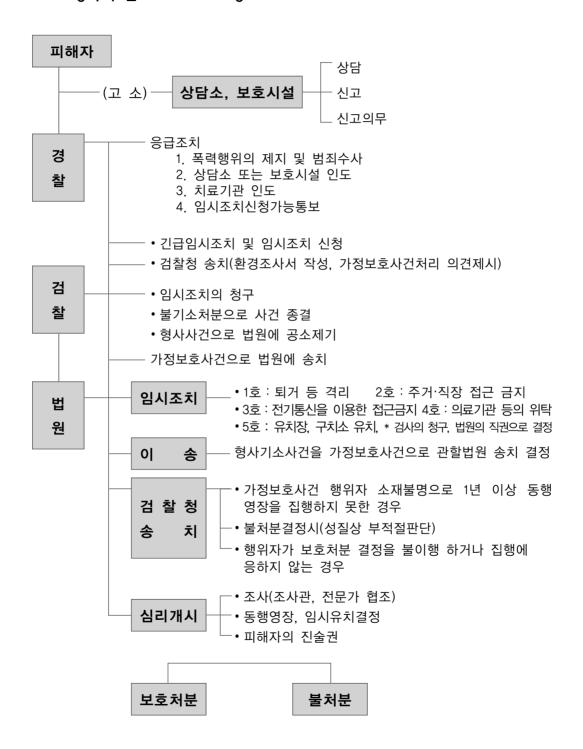
- 개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신변안전조치 가능(법 개정으로 신설, '15.7.1, 시행)
- 이 내용
 -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 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 시행령 상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참고인·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피해자 주거 보호(주거지 순찰, CCTV 설치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등

〈신변안전조치 절차〉





다. 가정폭력 신고 후 처리 과정





라.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와 사실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와 사실

- ▶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 ☞ 가해자의 92.1%가 전과가 없는 자로 여타 형시법규위반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음
 - ☞ 가정폭력은 주부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 세습화 등을 초래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 행위라는 인식 전환 필요
-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 ☞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은 질적으로 다름. 가정폭력시 흉기 등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8.6%) 하거나 재물손괴(4.4%)를 수반하고. 감금(0.3%)하는 등 강력범 형태를 띠는 사례도 적지 않음
 - ☞ 현장출동시 가해자·피해자 격리 등 응급조치 및 수사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적극 활용 필요
- ▶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여성이 흥분이 가라앉으면 처벌의사를 번복하기 때문에 사건처리하는 것은 경찰력 낭비다.
 - " '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신고 후 경찰의 조치내용을 보면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이 17.7%,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이 50.5%,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함'이 14.0%,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인도함'이 2.4% 등으로 오히려 경찰의 소극대응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
 - ☞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고, 피해자 처벌의사 번복시에도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등을 적극 설명해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 유도
- ▶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
 - ☞ 가정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치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큼
 - ☞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해서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사건 처리 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경찰의 개입은 건강한 가정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 ▶ 부부싸움은 결혼초기 서로 적응하기 위한 '사랑싸움'이다.
 - ☞ 결혼기간은 10~15년(28.8%), 5~10년(23.6%), 15~20년(16.4%)으로 고른 분포
 - ☞ 피해자들은 주로 아내(83%)이고, 아내폭력 피해가정의 65.9%가 자녀폭력을 동반, 청소년 가출을 야기하는 등 부부만의 문제가 아님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와 사실

- ▶ 부부가 살다보면 안 싸우고 살 수 없다
 - ☞ 기정폭력 발생원인은 기정불화(44.5%), 성격차이(14.1%), 빈곤(10.2%) 등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 재발가능성 상존
 - ☞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5년 이상 누적돼 오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사건 처리 시 과거의 폭력행사 여부 확인 필요
- ▶ 가정폭력 현장조치 시 경찰관들에게 권한이 없다.
 - ☞ 가정폭력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현장출입 및 조사권이 도입되어 피해지를 대면할 수 있음
 - ☞ 가정폭력사건도 여타 폭력사건과 현행범인 체포 등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하되, 가특법 상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 특별규정 준수 요망
 -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권을 경찰관이 직접 조치가능

마. 가정폭력 사례지원 시 유의사항

- 0 상담지원 시
 - 피해자의 생활 및 태도에 대한 평가성 발언이나 가해자 입장을 동조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절대 엄금
- ㅇ 수사지워 시
 -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도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노력
 - ※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해서 형사처분 외에도 보호사건 처리 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경찰의 개입은 건강한 가정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 필요
 - 가정폭력범죄는 재발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
- ㅇ 법률지워시
 - 신고와 이혼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징역·벌금·구류 등 형사처분을 받지 않음을 설명



- 피해자가 사건처리는 하지 않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만을 원할 경우, 조사 단계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희망하도록 설명
- 모든 지원과정에 해당하는 유의점
 - 피해자를 탓하거나 모욕·굴욕감을 주는 용어 사용 금지
 -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범죄를 미화하는 언행 금지 ex) "남자가 화가 나면 한대 때릴 수도 있지."



[서식 7]

【환경조사서 서식】

○ ○ 경 찰 서

수신 : 경찰서장 제목 : 환경조사서

피의자 ○○○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의사실과 관련 환경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항	목	내		;	용	비고
범	동	기	피의자가 3년전부터 다른 여자만 바ጵ을 피워 가정봉하가 생긴 이후 피해자가 な자시를 함께 하지 않자 폭격 행사		생		
	상습	성 유무	1년전 부터 3억에 1번정도	- 숙	응 먹고 행패		
죄		위 양 태 사용 등)	식카은 등고 취두르며 주	떡과	방로 구타하	ž	
	성 1	명(한자)	000(000)		생년웍익	00. 0. 0	
	성	격	이기적이고 난폭함				
피		소 행 동 자에 대한)	4개월간 생활비흥 갖다주 동보지 않고 부인이 많은 폭행함				
의	경 력	• 직 업	•••••				
	교	육정 도	OO 종업		격혼기간	7년	
자	음	주 량	평 소 소주 <i>1</i> 병		번행당시	소주 2병	
	정신	장애여부	이혼경격이 있어 이에 대	창 분	R.픙엑스가 있	L a	
	가정폭력범죄 경력		'98.7월 가정폭력 보호사	건(작	[근급지 <i>1</i> 개	월) 1번	
	성 1	명(한자)	000(000)		생년웍익	00. 0. 0	
피	피경	해 정 도	허리부분 타박상 진단 12	•			
4	성	격	내성적이며 '났라 ' 각 어욱	ଧ지	못함.		
해	경	력	가정주부				
 자	학	력	○○ 졸업	이혼	의사 유무	무	
'	처벌의	의사 유무	ਜੰ	엓	조치 신청유	무 유	
	정신적	정신적 장애여부 없 은					
 7L			처, 아등 2명(17세, 15세), 땅 1명(11세)				
건	생계 부양자		피의 자				
관	생활수준		전세보증급 7,000℃원, 웍소득 80℃원으로 하류생학				
가족관계등	주거지 생업여부 주거지에서 수퍼마켓 경영						
○ 주거지의 구조 방 2개, 거식 1개 등 25명		3					
	기	타					



[서식 8]

【응급조치보고서 서식】

		○ ○ 경찰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경찰서장		
참	조 과장		
제	목 응급조치 보고서	1	
행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위	③ 직 업		
	④ 주 거		
자	⑤ 피해자와의 관계 ⑥ 가 정 상 황		
7	⑥ 가 정 상 황 죄 명		
8	<u> </u>		
9			
	신 고 자		
	¹ 를 받고 즉시 현장에	·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사건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였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피해자 동의함) □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여 긴급치료를 받게 함 □ 폭력행위의 재발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 ○ 경찰서 과	계
		사법경찰관(리)	인



IV

성매매 피해자 지원

7

지원 대상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 범죄 피해자
 -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 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 형사처분을 면제하고.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됨

2 점 수

가. 접수 유형

- 경찰관서를 경유하여 접수하는 경우
- 상담소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
- 직접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나. 신고 접수 시 행동 요령

【 피해자가 확인되는 범죄 】

- ㅇ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 피해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
 -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업주가 함께 있는지, 감금상태인지 등)
 - * 전화가 곤란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 이용
 - 신고의 객관성 확인을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무리하게 확인하는 자세 지양



- 0 비노출 출동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피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상담접수와 동일요령으로 처리한다.
 - 피해자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임의로 종결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경찰관을 출동시켜 상황을 파악

【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범죄 】

- 범죄의 발생지와 내용을 상세히 청취한다.
 - 업소 내부구조와 장부 · 콘돔 등 증거물 위치를 정확히 청취하는 것이 중요
- 신고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상세한 신고가 되도록 유의한다.
 - 대부분 피해여성이나 종업원 등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 선불금 무효규정,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보상금 제도 등 적극 안내

다. 상담 전화인 경우

- 법률지식은 물론 성매매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을 실시 한다
- 가능한 모든 상담 건을 NGO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범죄피해 외에도 선불금 문제·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 NGO 지원 단체·경찰병원 등을 통한 법률·의료지원 실시
- 상담전화라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신고접수와 동일 요령으로 처리한다.

3 수사 지원

- ㅇ 증거물 및 피해자진술조서를 사건 발생 관할경찰서에 인계
 - 성매매 조건의 선불금 무효, 신뢰관계자 동석 가능 서면고지
 - 비밀통로, 감시카메라, 영업행태 등 업소단속에 필요한 정보 최대한 확보
- ㅇ 신고자 신원 및 신고내용 보안 유지



4 사건 조사 시 행동 요령

가. 기본 조사 지침

- 성매매 피해여성 조사는 여경이 한다.
-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분 면제 및 피해자보호 규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내용 조사 철저
- ㅇ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및 재활지원
- ㅇ 업주 등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성매매 방지 분위기 정착

나. 조사 전 고려 사항

-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피해자와 직접 연락
- ㅇ 피해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수사회의 개최

성매매 피해여성의 특성

- 차용각서로 작성된 불법 선불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 가족 등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락을 취하는 것을 꺼려함
- 업주 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업주와 경찰이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이 강함(평소 업주가 경찰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경우가 많음)
- 피해사실을 알리고 난 후 업주 보복 등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성매매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자기비하적 태도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해 성매매 사건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

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여성 인권보호

- ㅇ 성매매 피해여성 조사 시 서면고지 사항 고지
 - 여자경찰관 지정
 - 진술녹화실 이용 조사
 - 상담소 등의 지원(상담·경찰관서 동행·조사 시 동석 등) 가능
 - * 조사과정에서 상담원 동석 및 피해여성 상담, 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성매매 관련 기관과 적극 연계 필요



- 성매매 조건의 선불금 무효
- 신뢰관계자 동석
-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침해 방지
 - 객관적 입장 유지하고 합의 종용 등 업주유착 의혹 우려가 있는 행동 엄금
 - 구성요건과 관련 없는 성경험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질문 금지
- 피해 내용에 대한 포쾈적 수사
 -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분 면제 적극 활용
 - 성매매 행위에 대한 장소·자금·토지·건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수행
 - 성매매특별법상 범죄행위 외 폭행·협박·납치·감금·공갈·부녀매매· 사기·횡령·강요·강가 등 업주의 인권유리행위 입증에도 노력

5 상담 지원

- 애로사항 청취 및 피해내용 확인
- 업주로부터 위계·위력·감금·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성매매피해자로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으며 성매매와 관련한 채무 또한 무효임을 설명
 - * 성매매피해자(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ㅇ 성매매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 필요성 고지
 - 업주를 신고·수사하게 되면 경찰에 의해 증거를 수집, 업주를 처벌하게 되어 차후 업주의 협박이나 폭로 위협을 보복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선불금 민사 소송에서도 쉽게 승소할 수 있음
 - * 일반 성매매 여성의 경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고지



- 업소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각종 질환 발생 위험과 업주의 성매매강요 등 인권침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상담 후 쉼터 생활과 의료·수사·법률지원 및 자활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연계
- 상담기록지 작성(성폭력 부분 참조)
-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업주의 불법행위 및 성매매여성의 피해사실 최대한 발굴

6 법률 지원

-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을 통해 선불금 등 민·형사소송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심리·재판 등을 위한 법원 동행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7 의료 지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및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가접비용 지원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료비의 지원범위)
 - 1. 성병감염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 3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치료 보호비용
 -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 외상관련 장애,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제거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 8. 그 밖에 성매매피해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 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 ※ 성매매 피해자 의료비용은 성매매피해 상담소에 연계하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

8 직업훈련 및 심리치료 지원

-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직업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을 통한 취·창업 및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 정서적·사회적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운영

9 기타 복지제도 안내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
 - 그 밖의 자세한 복지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연계
- 신용회복 지원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상환유예, 분할 상환, 이자면제 등) 안내
- ㅇ 성매매피해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안내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



10 성매매 피해 상담소 현황

지역명	상담소 명칭	전화번호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02-474-0746
기이트레기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02-814-3660
서울특별시	이룸	02-953-6280
	에이레네 상담소	02-3394-7936
부산광역시	살림	051-247-8297
구신경칙시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051-816-1366
미크라여기	대구여성회관 상담소 민들레	053-430-6020
대구광역시 	힘내	053-422-8297
인천광역시	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낙상담소	032-501-8297
광주광역시	언니네	062-431-8297
대전광역시	느티나무	042-256-8297
울산광역시	울산 성매매피해 상담소	052-249-8297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 Us'	031-747-0117
거기ㄷ	두레방	031-841-2609
경기도	어깨동무	031-222-0122
	여성인권센터 쉬고	031-948-8030
강원도	춘천 길잡이의 집	033-243-8297
충청북도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043-257-8297
충청남도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041-575-1366
전라북도	전북현장상담센터	063-282-8297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061-753-3644
전라남도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061-662-8297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061-276-8297
경상북도	새날	054-231-1402
거사나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055-246-8298
경상남도	여성인권상담소	055-273-2241
제주도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064-702-8297

03

센터 운영





I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사업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2 명칭 및 로고

- 센터의 명칭은 '해바라기센터'(서비스 권역 병기)로 한다.
- 센터의 로고는 다음과 같으며, 로고 상단에는 여성가족부 지원을 명시하고 로고 하단에는 '○○시·도, ○○지방경찰청, ○○병원(운영기관)'을 병기한다.



- 센터는 피해자가 찾기 쉽게 병원 내 출입구 등에 위 로고를 활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센터는 통합전화번호 1899-3075의 공통 전화 회선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담당업무표를 만들어 센터 내에 게시하도록 한다.



3 운영방법

가. 관련기관

- o 여성가족부, 특별 및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운영기관(병원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과 사전 협의

나.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지원
- ㅇ 야간근무 필요직군 : 경찰(여경), 상담원 등

다. 설치 기준

- ㅇ 시설기준 : 의료기관 내 설치 원칙
- 설치면적 : 약 100제곱미터 이상
- 기본시설: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녹화실, 진료실(산부인과 진료 장비구비), 피해자 대기실 등

라. 보조사업자 결정

- 유영 자격(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선정 절차
 - 시·도지사는 모집공고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선정된 병원 및 의료원에 위탁
 - * 모집 공고일 이전에 해당 지방경찰청과 공개모집계획에 대해 사전협의
 - *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찰청과 협의하여 시·도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공고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① 모집공고

- 지자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최소 7일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사업자 자격, 사업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사항
- 신청 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시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하되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②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법인허가증(사본) 및 정관
- 사업운영기관 현황(의료진 및 사업 실적 현황, 대표자의 경력사항 등 포함)
- 사업계획서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③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시·도지사가 위촉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워을 포함
-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간 의결로 결정
- 위원은 아동·여성 폭력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함
- 운영 위탁을 신청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공고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경찰청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④ 심사 방법

- 시·도지사는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 공간 등 제반 여건에 대해 현지 실사를 사전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응모자가 사업 설명회를 통해 직접 참여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심의
-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



마. 보조사업의 취소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1) 사업기관의 공익상 또는 기타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 3) 사업기관이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4) 사업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4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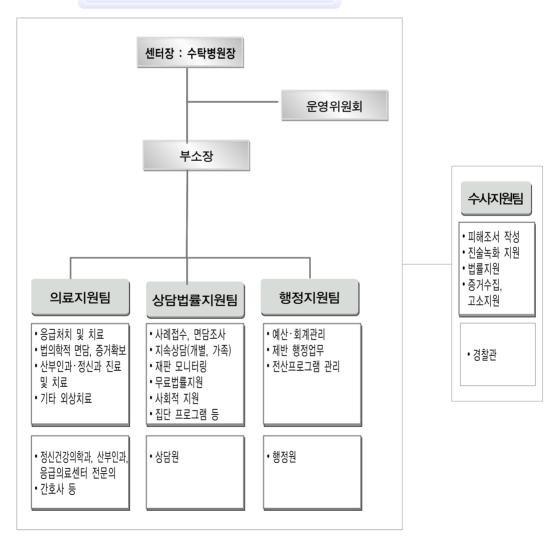
사 업	내 용
ㅇ 상담 지원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유관기관과의 연계
ㅇ 의료 지원	- 응급치료 - 외과 및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 수사·법률지원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증거물 채취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등 법적 증거 확보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 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한 소송지원



5 조직 및 업무 분담

○ 센터는 센터장, 부소장, 상담지원팀, 의료지원팀 등을 두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직도 및 팀명 변경, 그 외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수사지원팀은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조직도(표준안)





○ 센터의 종사자별·팀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업무 내용
센터장 (수탁병원장)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센터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센터 종사자(이하 센터 배치 경찰관 제외) 인사에 관한 사항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감독 중요사안 발생 시 센터 운영위원회 소집 및 보고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소장	• 센터 직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물품관리 • 병원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기타 센터 운영관련 센터장 보좌
상담원	• 피해자·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지원 연계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간호사	 피해자·가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외상치료 증거채취(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보조 포함)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의 관리
임상심리사	• 아동·장애인 전문 상담 • 아동 및 부모 심리치료, 심리평가
비상근전문의	• 센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소견서 발급, 증거채취 • 센터 의료지원에 대한 자문, 법정 증언 등
행정원	• 회계 및 물품관리, 기타 문서관리 등 일반서무 • 연도 말 정산 및 예·결산관리, 운영 실적 관리 등

○ 수사지원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수사팀장	• 수사업무 총괄
경찰관	 해당 경찰관서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 진술녹화·사진촬영·성폭력 응급키트에 의한 증거수집 입회·감식의뢰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파악, 신속한 전파로 범인 검거에 기여 피해자 상담 및 자문변호사 연계 각종 법률지원

○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담당업무표를 만들어 센터 내에 게시하도록 한다.



6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가. 기능

○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당해 연도 사업 실적과 익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운영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에 대해 협의

나. 구성

- 센터는 의료전문가 및 검·경찰 관계자, 여성폭력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분야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 특히 위촉위원에는 지역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청소년 상담 및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중에 1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은 여성폭력 등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력을 갖춘 자 가운데 센터장 또는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센터장이 한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 운영위원회 역할(연 1회 이상 개최)

- ㅇ 센터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 지역 내 유관기관 협조 강화
- 피해자 의료/법률/수사지원 내실화
-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및 센터 활성화 관련 사항 등



7 센터별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가. 기능

○ 센터 사업내용, 조직 및 업무 분담, 인사운영, 예산 집행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

나. 구성

- 해바라기센터를 담당하는 지자체·지방경찰청 담당자와 병원·센터(부소장) 관계자로 구성한다.
- 협의체 팀장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한다.
- 협의체 구성원은 소속 기관을 대표하여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필요 시 팀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팀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다. 역할

- 피해자 통합 지원 및 구성원 간 협업 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센터 운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정·개선
- 센터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여성가족부-경찰청 실무협 의회에 전달



II

해바라기센터(아동형)

1

사업 목적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외상 치료, 심리 평가 및 치료, 사건 면담,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2 명칭 및 로고

- 센터의 명칭은 '○○시·도 해바라기센터(아동)'으로 한다.
- 센터의 로고는 다음과 같으며, 로고 상단에는 여성가족부 지원을 명시하고 로고 하단에는 '○○시·도, ○○지방경찰청, ○○병원(운영기관)'을 병기한다.



- 센터는 피해자가 찾기 쉽게 출입구 등에 위 로고를 활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담당업무표를 만들어 센터 내에 게시하도록 한다.



3 운영방법

가. 관련기관: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나. 운영시간

- 0 09:00~18:00
 - * 종사자별 탄력근무를 통해 피해자의 수요가 집중되는 요일이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 센터 운영시간 외의 시간은 재택당직근무제를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 및 치료지원 연계가 가능토록 함

다. 설치 기준

ㅇ 시설기준 : 운영기관 병원 내 또는 병원 외 설치 가능

○ 설치면적 : 약 330제곱미터 내외

○ 기본시설: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료실, 피해자 대기실, 심리 평가실, 심리치료실 등

라. 보조사업자 결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마. 보조사업 결정의 취소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4 사업 내용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 등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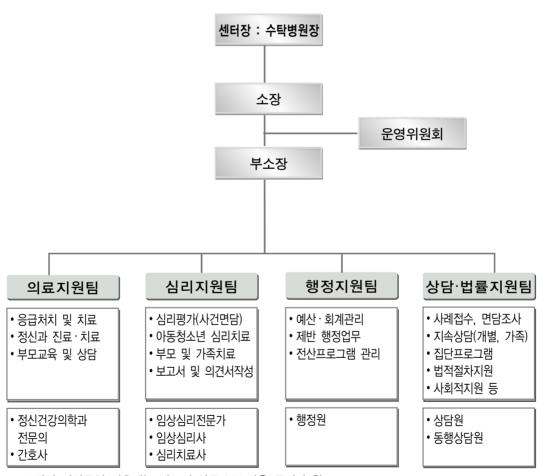
사 업	내 용
○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치료 서비스제공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성폭력 피해유형에 따른 외상치료 * 피해정도 진단 및 증거채취 포함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의학과적 우선 치료 서비스 및 운영 기관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피해자 진료 대기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인근 (소아)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과의 연계 치료 성폭력 피해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
○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피해자 조사(수사)지원 • (필요시)수사관련 진술내용 등 영상물 녹화 • 증거물 확보 등을 위한 법의학 연계시스템구축 - 성폭력 피해자 법적절차에 따른 지원 •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업무 진행 - 기타 법적절차 전반에 관한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긴급 구조 지원체계 구축·운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소아)정신건강의학과의사, 산부인과 등 의료전문가, 아동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법률가, 임상심리전문가, 성폭력상담전문가 등 인력풀 구성 피해사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실정보 수집 및 분석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축	 상담, 보호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계지원 서비스망 구축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자원공유를 위한 지역 사회 자원의 DB구축
ㅇ 기타 기능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례연구 센터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 현재적, 잠재적 아동 및 부모 대상 홍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센터 운영관련 주요사항 자문



5 조직 및 업무 분담

○ 해바라기센터(아동)는 센터장, 소장, 의료지원팀, 상담·법률지원팀, 행정 지원팀을 두며 시·도와 협의하여 팀명 변경 및 그 외 필요한 팀과 팀장을 둘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아동) 조직도(표준안)



-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반드시 상근 부소장을 두어야 함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변호사는 상근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센터의 종사자별·팀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업무 내용
센터장	•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 센터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장	 직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물품관리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병원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센터 운영관련 센터장 보좌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부소장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 소장을 보좌하여 직원 복무, 예산, 물품관리 등 센터 운영 관련 행정 총괄 • 소장 부재 시 소장 역할 대행
정신건강의학과 비상근전문의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의료지원팀	 성폭력 외상치료 등 의료적 지원 전문적 치료 및 상담 법의학적 면담, 증거 확보 증거채취(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보조 포함)
심리지원팀	• 심리평가(사건면담) •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부모 및 가족 치료 • 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 재판 시 전문가 의견제시
상담 · 법률지원팀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조치 사례관리 실천 : 지속상담, 사례회의 법적 절차 지원, 고소·고발의 조력,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
행정지원팀	• 회계 및 물품관리

- ※ 동행상담원의 경우 센터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서 소속 팀을 정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 센터별 실무협의체 설치 · 운영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 m I\hspace{-.1em}I\hspace{-.1em}I}$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사업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피해를 예방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개입이 필요한 성인 등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2 명칭 및 로고

- 센터의 명칭은 '해바라기센터'(서비스 권역 병기)로 한다.
- 센터의 로고는 다음과 같으며, 로고 상단에는 여성가족부 지원을 명시하고 로고 하단에는 '○○시·도, ○○지방경찰청, ○○병원(운영기관)'을 병기한다.



- 센터는 피해자가 찾기 쉽게 병원 내 출입구 등에 위 로고를 활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센터는 통합전화번호 1899-3075의 공통 전화 회선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담당업무표를 만들어 센터 내에 게시하도록 한다.



3 운영방법

가. 관련기관: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나. 운영시간: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다. 설치 기준

- 시설 기준 : 운영기관 병원 내 설치 원칙(병원과 차량 5분 거리 내에 심리치료 공간은 별도 설치 가능)
- 설치면적: 약 330제곱미터 내외(병원 내 상담실, 안정실, 진료실, 진술녹화실
 등 약 100제곱미터는 필수 설치)
- 기본시설: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료실(산부인과 진료장비 구비), 진술 녹화실, 피해자 대기실, 심리 평가실, 심리치료실 등
- 라. 보조사업자 결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 마. 보조사업 결정의 취소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4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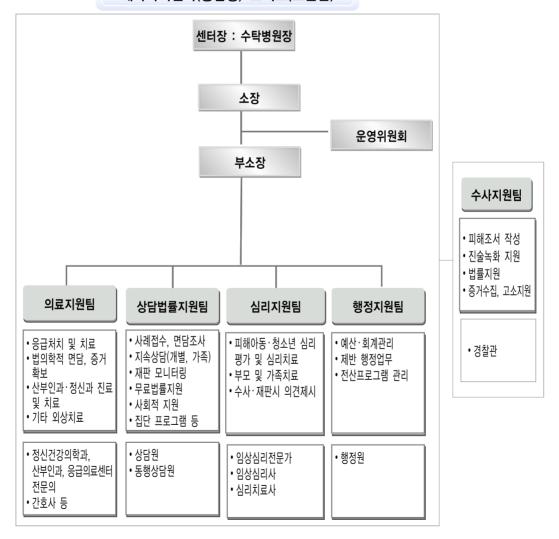
사 업	내 용
상담 및 심리 지원	○ 24시간 사례접수, 면담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assessment) ○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조치 ○ 사례관리실천 : 사례회의, 지속상담 ○ 후유증 및 현재 심리상태 평가 ○ 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개별상담, 가족상담 -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자원동원을 통한 사회적 지원 ○ 가족캠프, 부모모임, 피해자 모임 등 집단 프로그램 ○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
의료 지원	 ○ 24시간 응급조치 및 응급치료 ○ 신체사정, 법의학적 면담 ○ 외과 및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수사·법률 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 증거물 수집 ○ 조사 지원 : 진술조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등 ○ 성폭력 피해자 법적절차에 따른 지원 -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 재판 모니터링 및 신뢰자 동석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 구축	 전문가 그룹 운영: 의료인((소아)정신건강의학과의사,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법률가, 종교인, 사회복지학자, 심리학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 및 자원동원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및 지역연계망 구축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NGO와의 연대
기타	○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예산 및 회계 관리 ○ 홈페이지 관리 ○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전산화 관리(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전산화는 제7장 【참고 1】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규정(P.191)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함) ○ 제반 행정업무



5 조직 및 업무 분담

- 센터는 센터장(병원장), 소장, 부소장, 상담법률지원팀, 의료지원팀, 심리지원팀, 행정지원팀을 두며, 시·도와 협의하여 팀명 변경 및 그 외 필요한팀과 팀장을 둘 수 있다. 수사지원팀은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지방경찰청·병원·센터 관계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조직도(표준안)





○ 센터의 종사자별·팀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업무 내용	
센터장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센터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센터 직원 임면(이하, 센터 배치 경찰관 제외), 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장	 직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물품관리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병원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센터 운영관련 센터장 보좌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부소장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소장을 보좌하여 직원 복무, 예산, 물품관리 등 센터 운영 관련 행정 총괄 소장 부재 시 소장 역할 대행 	
정신건강의학과 비상근전문의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의료지원팀	• 법의학적 면담, 증거 확보 •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외상치료 • 증거채취(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보조 포함)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의 관리	
심리지원팀	• 심리평가(사건면담) •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부모 및 가족 치료 • 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 재판시 전문가 의견 제시	
상담 · 법률지원팀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조치 사례관리 실천 : 지속상담, 사례회의 법적 절차 지원, 고소·고발의 조력,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 	
행정지원팀	• 회계 및 물품관리	

[※] 동행 상담원의 경우 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서 소속 팀을 결정할 수 있다.



○ 수사지원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팀장	• 수사업무 총괄
경찰관	 해당 경찰관서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 진술녹화·사진촬영· 성폭력응급키트에 의한 증거수집 입회·감식의뢰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파악, 신속한 전파로 범인 검거에 기여 피해자 상담 및 자문변호사 연계 각종 법률지원 법적 절차 지원, 고소·고발의 조력 등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 센터별 실무협의체 설치 · 운영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IV

운영 공통사항

사업의 평가

- 여성가족부장관은 매 3년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해바라기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시·도지사 및 해바라기센터는 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해바라기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 미시행 기간 중 센터 사업 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방문 및 이행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평가가 시행되지 않는 해에는 시·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 하여 관할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2 이용자 만족도 조사

-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전반적인 치료적 지원, 수사지원, 법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한다.
- 만족도 평가는 센터 이용 종결 시 또는 적절한 시점에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권유하여 실시하며,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익년도 1월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시·도지사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장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결과 보고서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3 장부의 비치 및 관리

○ 각종 장부는 다음을 참조하여 비치·관리한다.

■ 장부명 및 보관·비치기간

부 책 (장 부) 명	보관·비치기간	비고
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센터의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영구	
종사자 인사기록부 등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휴가대장 - 승진, 승급에 관한 서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사항, 재해보상 관련 서류, 취업규칙(10인 이상 센터)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재해보상 관련 서류는 청구권 소멸시까지
예산 및 물품 관련 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관련 증빙서류	5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식 준용
종사자 채용 관련 서류	5년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수발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서류	3년	
센터 운영일지 및 운영관련 자료철 - 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사업관련 제반서류 포함	3년	
피해사실 관련 서류 - 사례관리파일, 증거자료 등 - 종이문서와 모든 파일 보관	준영구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보관

- ※ 피해사실관련 서류는 공소시효 민료시까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판이 종료될 경우 선택적 폐기 가능
 - 관련 장부는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별도 보관한다.
 - 센터의 재산관련 서류, 종사자 인사기록부 등은 특별 관리한다.
 - ㅇ 모든 문서의 생산 시 생산일자와 폐기일자를 표기한다.



4 개인정보 보호

-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서에 의한다 ([서식 11]).
-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 폭력피해자 보호 사업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전산화 프로그램 사례 입력 및 조회는 센터외의 장소에서 열람할 수 없으며, 종사자의 불찰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참조).
- 언론기관에 노출되는 기사 및 인터뷰는 논란의 요지가 있는 주요사안의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여성가족부나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과 협의한다.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센터근무기간 중 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작성·수집된 문서와 관련 기록은 모두 센터에 귀속한다.
- 센터 내 모든 종사자는 입사 및 퇴사 시「개인 정보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서식 13]).
- 종사자는 퇴직 시 센터의 장에게 관련 자료 목록을 작성, 기록과 자료를 위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진료 및 평가 등 피해자 지원 자료의 관리

- 진료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과 보호자,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필요시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진료 기록이 포함된 차트, 진료 기록, 치료 기록, 심리평가 원자료, 녹화 테이프 등은 외부인 및 내방객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며, 별도의 공간에 보존한다(3, 장부의 비치 및 관리 참조).
- 심리평가 보고서의 원본은 반드시 1부여야 하며, 개인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 해서 보관하다.
- 심리평가 보고서의 열람 및 복사 : 각 센터별 내부 지침에 따른다.
-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서 심리평가의 원자료 제출을 요청할 시,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워칙으로 한다.
- 심리평가 시에 성폭력 사건에 대해 탐색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요청 할 시 필요한 부분의 녹화테이프(CD)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수사·재판과정에서 상담내용 등을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공식적 요청에 한해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에 따라 별도의 자료보관실을 두어 물리적 접근통제가 되도록 잠금장치(열쇠, 도어락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료보관실 내에는 접근하는 삭제관리자 및 담당자를 두어 해당 사람만 접근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6 보험의 가입 등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수탁재산(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필수, 병원건물 전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필요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임의)에 가입한다.



-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필수).
- 회계 담당 직원의 경우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해바라기센터의 종사자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역고소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비, 센터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다.

04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



I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1

종사자의 수

- 종사자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일정 인원 이상을 상근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 센터는 상근 종사자 6인 이상, 여경 3~5인
 -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겸직
 - 상근 : 부소장(1), 상담원(3~5), 간호사(1~4), 행정원(1), 임상심리사(1)
 - * 해바라기센터(아동, 통합형)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임상심리사를 배치할 수 있음

2

종사자의 자격요건

종사자	자 격 요 건
부소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법의)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수사팀장 겸직 가능



종사자	자 격 요 건
상담원	 ○ 공통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존에 채용 중인 상담원이 자격요건에 미비한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임상 심리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자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간호사	 ○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간호학 전문학사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법의간호사 우대
행정원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예산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예산, 회계 등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예산회계 유경험자 우대
비상근 전문의	ㅇ 수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등 전문의
공통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가 아닌 자 ○ 상근가능자



상담원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 (수습직원)

-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중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하며, 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II

해바라기센터(아동)

1

종사자의 수

- 상근 종사자 8인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센터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직군별 종사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겸직
 - 상근 : 소장 또는 부소장(1),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2), 간호사(1), 상담원(2), 행정원(1)
 - ※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 등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겸직)이 가능하며,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 부소장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함
 -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주 2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 해야 하며, 부소장을 별도로 두어야 함

2

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	자 격 요 건
소장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당해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부소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법의)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종사자	자 격 요 건
임상 심리 전문가/ 임상 심리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취득한 자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우대
심리 치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사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상담원	 ○ 공통: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상담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우대 ※ 기존에 채용 중인 상담원이 자격요건에 미비한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자격요건을 갖추 도록 하여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동행 상담원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상담원 급여의 90% 인정하되, 상담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상담원 보수 인정 가능 ※ 기존 직원 중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기존대로 인정하되, 빠른 시일 내에 동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한다.
비상근 전문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행정원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공통사항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상담원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 (수습직원)

-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지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중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다
 - ※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하며, 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심리치료사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 (수습직원)

-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병원 및 심리치료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병원 및 심리치료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한다



 ${\rm I\hspace{-.1em}I}$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

종사자의 수

- 센터는 센터장, 소장, 부소장, 상담원,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경찰관으로 구성
-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겸직
- (대도시) 15명 내외 : 상담원 6~7명, 간호사 3~5명, 임상심리전문가(임상 심리사, 심리치료사)4명, 행정원 1명
- (중소도시) 12명 내외 : 상담원 4~5명, 간호사 2~3명, 임상심리전문가(임상 심리사, 심리치료사) 3명, 행정원 1명
 - ※ 센터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군별 종사자 수 조정 가능
 - ※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 등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겸직)이 가능하며,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 부소장(1)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함
 -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주 2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해야 함

2 종사자의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소장 부소장 임상심리 전문가/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동행상담원	ㅇ 해바라기센터(아동형)과 같음
간호사상담원비상근전문의행정원공통	ㅇ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3 해바라기센터(거점)

- ㅇ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에는 상근 또는 비상근 소장을 둠
-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에 지원되는 별도의 예산으로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종사자 외 상근 인력을 4명 이상 둠
 - 상근 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1명 등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고, 상담원, 간호사, 행정원,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을 추가 배치할 수 있음
 -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의 소장 또는 부소장 역할을 수행함. 부소장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점형 해바라기 센터에 2명의 부소장을 둒
- ㅇ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음

종사자	자 격 요 건	
소장 또는 부소장	○ 의료법에 의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전문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병원 및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의 자격 을 가진 자 ※ (아동)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상담원, 간호사, 행정원 등은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준용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가 아닌 자	



- ㅇ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 대학 병원급의 통상 연봉액을 적용하되, 아래 상한선을 준수
 - 부득이하게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선의 10% 범위내에서 시· 도지사와 협의

	전문의		전문가	
직 군 명	정신건강의학과 전공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세부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연봉 상한표	80백만원	100백만원	55백만원	65백만원

[※] 전문의가 부소장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의 소장에게는 인건비의 50%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ㅇ 기타 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 센터 사업안내 준용



IV

해바라기센터 공통사항

1

종사자 임면 및 채용 조건

가. 임면권자 등

- 소장을 포함한 상근인력은 인사위원회의 면접 및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임면하며, 상근인력을 임명 또는 면직시키는 경우 센터장은 소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 센터장은 소장, 부소장을 임명 또는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종사자 임명 또는 면직 즉시 시·도지사에게 관련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인사위원회는 시·도관계자, 수탁병원 관계자, 지방경찰청 관계자, 학계, 관련전문가 등 포함 4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채용조건 등

-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시·도지사에게 채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 보고하도록 한다.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장, 장기실업자, 저소득층(차차상위 포함) 등
- 종사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시·도지사는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종사자 채용 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이력서 등)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포함
-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류
- 관련 분야 자격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일체
- 기타 센터장이 요구하는 서류

2 종사자 복무

가. 운영시간 및 복무

- 해바라기센터(아동)는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피해자 편의를 위해 탄력적으로 시간 연장 가능)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통합형)는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교대근무 : 경찰, 상담원 등 ※ 근무형태 조정 시 종사자 간 사전 혐의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임상심리사(치료사)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하여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토~일요일에도 심리평가 및 치료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 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중 대체휴일 지정
-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해바라기센터외의 타 기관에 종사 (자격증 대여 포함)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 교육(주간대학원, 정기적인 외부 강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 단,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센터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격유지관련 교육은 센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교육 출장처리).
- 센터 상근 종사자는 타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겸직 활동 불가
 - 개인 연가활용 등을 통한 대학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출강 불가
 - 종사자가 대가를 받고 근무시간 내에 월 2회를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자문회의(사례지원을 위한 토론), 교육과정,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 기타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행위는 겸직으로 본다.

- ※ 외부강의는 내부 품의 등 사전 결재를 받고 별도 대장에 수령액을 포함하여 정리
- 근무시간 중에 학교, 공공기관 등에 예방교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일정 비율을 잡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다(별도 통장 개설).
 - ※ 센터의 수입은 종사자 복리후생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ㅇ 상근 인력에 대한 유연 근무제도 시행
 - 센터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대학원 진학 등 자기 개발·센터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근무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1일 근무시간 단축, 주당 근무일 단축 등 다양한 근무형태 운영 가능. 단,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토록 해야 하며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2개월의 유급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시(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나. 종사자 교육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직원(보수)교육 등의 모든 교육은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 중 교육이 가능하며, 센터장은 해당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 출장 처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교육 전문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과정,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 교육의 경우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보수)교육 이므로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 중 교육이 가능하며 센터장은 해당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상담원 등은 주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슈퍼비전 비용은 상한은 없으나 적정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비에서 집행토록 한다).
 - 슈퍼비전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 해야 한다(자격증 취득을 위한 슈퍼비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연차 유급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경조 휴가 등

○ 종사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등을 적용한다.

	ᅙᄀ	ᅡ잌	수표
_	TT/	_	—

구 분	대 상	일 수	
거 ㅎ	본인		
_ _ _ _	자녀		
출 산	배우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양	본인	20	
출 산	본인 출산 전후로	90	
유 · 사산 (본인)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	
	임신기간 12주~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	
	임신기간 16주~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	
	임신기간 22주~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	
불임치료 시술	불임치료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시 당일	1	
서서버지하기	(유급)임신한 종사자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휴가 가능		
여성보건휴가	(무급)여성종사자는 월 1회 생리로 인한 휴가 가능		

[※] 휴가일수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안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삽입함

[※]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사산은 제외함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기타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마. 센터 종사자 평가

- 센터의 장은 종사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연1회)
- 근무성적 평가는 근무실적 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을 포함하여 센터 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 근무성적 평가자는 상근 부소장을 포함하여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바. 임신한 여성종사자 등의 보호

- ㅇ 임신한 여성 종사자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는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함
- 임산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 근로를 못함(교대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로 우선 배치 등 근무시간 조정, 인력 수급 등 적의 조치)
- 센터장은 임신 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 임신 중인 여성종사자가 유산의 경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함(휴가일수가 30일 초과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채용 가능)
 - 임신 중인 종사자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ㅇ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종사자의 고용 상 불합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사. 종사자 소진방지

- ㅇ 센터의 장은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센터의 장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체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 개인 상담·심리치료 지원, 집단 상담·치료 지원
 - 힐링(정신건강·쉼) 프로그램 참여 지워
 - * 연간 1인당 30만원(프로그램 참여 시 교통비는 별도 지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 일회성 행사, 영화관람 등 정신건강과 관련이 없는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음

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 ㅇ 센터장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센터장이 종사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종사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센터장이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종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 상기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센터장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장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음(10일 이내 센터의 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 보상 가능)



자. 기타 복무 및 근로관련 규정 준용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방공무원법을 보충 적용할 수 있다.

차. 인건비 지급 상한 연령

-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건비 지급 상한 연령은 아래와 같다.
 - 소장 65세, 그 외 종사자 60세
 - * 위 상한 기준은 종사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 예산 지급 기준 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정당한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센터는 근로 계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종사자의 정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종사자 해고 등의 제한

- 0 다음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의무(법 제23조제1항)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 우선 재고용 관련(법 제24조, 법 제25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법 제27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법 제28조) 등 노동위원회 관련사항(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ㅇ 해고의 제한
 - 종사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강등, 감봉 기타 징벌 금지
 - 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에 의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 ※ 단, 일시보상(근로기준법 제84조)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



- 종사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해고 사유 : 사업의 양도, 인도, 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한함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하여야 함.
- ㅇ 해고의 예고
 - 종사자 해고 시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음
 -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여 센터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준 경우,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센터 업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
- ㅇ 해고의 예고 적용 예외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의 자
- ㅇ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시 종사자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 부당 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되는 행위의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
 -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경영상의 이유로 종사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종사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할 종사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함
-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문의(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

4 안전 관리

-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4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 센터의 안전은 부소장이 총괄 관리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병원 내에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되어 센터의 시설을 포함하여 병원시설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소화시설, 장비는 소방법령 제 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 점검함
- ㅇ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 센터장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 외부 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 시 자신의 임무를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시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조치

05

보조금의 관리



I

예산의 편성

1

예산 편성

- 센터의 장은 예산 회계 업무를 수탁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단, 처리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와 협의
- 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 진술녹화장비 내구 연한이 5년인 것을 고려, 장비 개선 예산 적절히 편성
- 연간 예산서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
-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 시에는 센터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
 - ※ 경미한 예산계획 변경은 센터 자체 내에서 내부 품의를 거치고, 관·항의 변경 또는 목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
 - ※ 다만, 100만원 이하의 예산계획 변경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관련 내용을 보고
- 예산의 편성·집행·회계 관리 등에 대해 본 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

2 인건비의 편성

- 센터의 장은 종사자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 호봉기준(참고사항)을 고려하고, 경력·예산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연간 예산계획 수립 시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
- 센터의 장은 예산 수립 시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센터 예산 이외의 수탁법인(병원) 전입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 소장의 인건비는 아래와 같음.

직 군 명	상근 소장	비상근 소장
월간 급여액(원)	3,350,000	1,210,000

- ※ 퇴직금. 사용자 부담 4대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주 2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부족할 경우, 월간 급여액에서 부족 근무시간만큼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함
-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치료를 위해 센터에는 비상근의료진을 배치할 수 있으며, 비상근의료진은 각종 진료행위, 피해자 소견서, 사례회의 등 자문, 수사·재판과정의 증언, 야간기급 Call에 따른 응급처치 등을 수행함
 - 비상근 의료진은 별도 종사자로 관리함
 - 센터 운영가능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1인 주 8시간 진료 기준 1인 월 130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진료 시간에 비례한다(ex. 1인 주 16시간 진료시 1인 한도액 월 260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며, 시·도에서는 진료지원 건수, 방문 횟수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 야간, 종사자 휴가·교육 등으로 수탁병원의 간호 인력이 센터의 간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일 5만원 이내)을 지급할 수 있음

3 시설 증·개축비 지원

- ㅇ 지원규모 및 단가
 - 증·개축 면적에 따라 개소당 330㎡까지 지원
 - 지원단가 : 2,303천원/m²(국비, 지방비 포함)
 - * 지원단가는 시설입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예산 과목 및 내역

가. 예산항목별 세부내역

항 목	내 역
인 건 비	• 상근직 보수, 제수당(시간외, 휴일수당), 직원 4대 보험료(국민·건강· 산재·고용보험), 퇴직적립금, 기타 복리후생 관련경비 포함
관리운영비	• 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제세 공과금: 공공요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 운영수당: 운영위원회 등 회의 참석비 • 업무추진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여비: 국내(근무지 내·외) 출장여비
사 업 비	홍보 및 교육사업비 등
시 설 비	시설 신·증축비, 개보수비, 비품구입비, 수리비 등
잡 지 출	보상금, 소송경비 등
예비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

나. 세입예산 과목구조

			과 목	내 역		
	관		항		목	- ਸ = ਜ
01	과년도수입	11	과년도수입	1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1.2.41		-1	211	이자수입	예금이자 수입
02	잡수입	21	잡수입	212	기타잡수입	기타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
		보조금 수입	경상보조금	311	운영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03			교소금	수입 수입	312	기타지원금
		32	자본보조금 수입	321	자본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4	이워그	0 0 7 41	/1 이외그	4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
04	기 큰 ㅁ	이월금 41 이월금		4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다. 세출예산 과목구조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3편나 시점[필요] 로포비족 로포세족될 신경기문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보수 (0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성과급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직급보조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02)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110)	상용임금 (03)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04)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 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 비 (01)	2.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일반수용비 (01)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운영비 (210)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공공요금 및 제세 (02)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 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운영비 (210)	특근매식비 (05)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시설장비 유지비 (09)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운영비 (210)	재료비 (1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일반용역비 (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운영비 (210)	관리용역비 (15)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과(팀) 운영비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국내여비 (0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월액여비 교육여비
(220)	국외여비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02)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 되는 경비
직무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수행 경비 (250)	특정업무경비 (02)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 경비 등(03)	1. 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0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보전금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10)	배상금 (02)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 첫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II

예산의 집행

1 수입·지출의 기본 원칙

- 운영기관장에게 예산집행책임이 있고 시·도지사가 지도·감독 한다.
- 센터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센터 또는 운영기관장(센터장) 명의로 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
- 예산 배정 지연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여 운영기관장(센터장)이 그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사후 정산 가능하다.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한다.
- 지출결의서 내부결재를 득해야 하고,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한다.
- 예산 집행 시 신용 카드 사용과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3만원 이상 지출시 간이영수증 증빙 금지)
- 물품구매(50만원 이상), 공사(100만원 이상), 기타(30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 견적서(1개 이상)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내부 품의 후 지출해야 한다.
- 예산 지출시 건당 100만원 이내는 부소장의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 재산조성비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기존 사용물건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의 경우는 교체를 삼가고 수리를 통해 사용한다.
 - ※ 내용연수 도달 이전 물품을 불용처리 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취득
- 센터의 관리비(전기료, 수도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는 적정 실비 수준으로 편성한다(병원에 납부하는 경우 포함).



2 예산 집행 기준

가. 국내여비지급표(공무원 여비기준)

■ 여비규정

(단위: 원)

구분	철도요금	선박운영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근무지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원	실비(상한 40,000원)	20,000원
근무지내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 철도요금·항공요금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함
- ※ 본인 소유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출장에 소요된 연료비는 철도요금 및 버스요금을 적용하나, 비용초과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 후 초과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원가능
- ※ 출장 여비는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지침', 교육훈련 여비는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교육 훈련 업무처리 지침' 준용(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참조)

나. 워고료 지급기준

- ㅇ 적용범위
 - ①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강사료와 병급 가능)
 - ②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 용 매 체	산 정 기 준	기 준 단 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200자 원고지 1매당 4,000원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 ㅇ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지급기준
 - ① 기준매수: 강의시간당 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②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 매수 150% 범위 내(45매까지)에서 지급 가능
 -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원고매수에 포함되지 않음



- ㅇ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작성 지급기준
 - 중요한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제작비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미래 창조과학부 고시)』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를 참고하고 보고서 중요도에 따라 업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

다.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예산범위 내 적정 지급)

■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 급 액	지 급 대 상
특 강	1시간	,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국책연구기관장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일반 1	1시간	200,000	3. 언논기판 국상, 논실위원급 이상 사 4. 대기언체 인지워근 이사
일반 2	1시간	150,000 50,000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대기업체 부장급 이하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보조강사	1시간	50,000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OHP, 차트)조작은 제외

-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 유명강사 등 위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득하고 적정한 강사료가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
-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내부행사
 - 연구용역 사업 및 위탁사업에 포함된 강사료 등 사례비



라. 연구, 심사, 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 기준

■ 전문가 사례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특정과제	1건	2,000,000원 이내	1. 특정과제 1개월 이상 연구자 ※ 동 지급액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용역으로 추진
연구	170	500,000원 이내	1. 연구용역보고서 감수 및 검토 의견서 작성
심사위원	1일, 건	200,000원 이내	1. 입찰 등 용역사업 사업제안서 심사(사업 1건당) ※ 4개 업체 이상 심사 시 50% 추가지급 가능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 합숙심사 시 300,000원 이내 3.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전문가 자문	1건	200,000원 이내	1. 사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고문변호사의 경우 300,000원까지 지급 가능 3.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지문결과보고서 제출
토론회,	1회(1일)	200,000원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세미나		100,000원	패널 멤버
위원회, 간담회	1일 2시간 초과시	70,000원 이내 30,000원 이내	1.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연구진 제외) 사례비는 용역 수행기관(용역비)에서 지급
시험위원	2시간 초과시	100,000원 50,000원	1. 합격자 선정을 위한 서류시험 위원 ※ 면접시험 및 외국인의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마. 전문상담위원 상담료 지급기준

■ 전문상담위원 상담료 지급기준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전 문 상담위원	1건	30,000원	1.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부부상담, 자녀문제상담 등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전문가 ※ 내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상담내역 등이 포함된 상담기록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 단, 상담위원의 자격을 고려하여 센터 내 예산에 따라 최대 50,000원까지 지급 가능

바.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지급기준

- ㅇ 적용대상 및 지급범위
 - ①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 하는 강사 및 전문가의 왕복교통비와 일비(지방의 경우 초빙강사의 이동 거리를 감안하여 실비수준의 왕복교통비 지급 가능)
- ㅇ 지급기준
 - ①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적용
 - ② 민간단체의 임·직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3호(4·5급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적용

사. 공연 등 출연료 지급기준

■ 출연료 지급기준

구 분	공연시간	1 회	초과 1인당 (10인 까지)	비고
성악, 대중가요 판소리, 사물놀이 등	1시간 이내	전문 1,000,000원 이내	50,000원 (10인 이상	
합창, 무용 등 단체 (10인까지)	기시신 이내	비전문 500,000원 이내	(10년 여성 단체에 적용)	공연
레크리에이션 진행	2시간 이내	전문 A급 500,000원 전문 B~C급 400,000원	50,000원	장비 포함
(보조강사 1인 포함)	초과시	200,000원	_	
각종 특기시범 (10인까지)	1시간 이내	300,000원	50,000원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진행시 인정하며 초과 1시간당 지급액에 50% 추가지급 가능(강의시간 산출과 동일)



아. 종사자 교육비 지급기준

- 유료 교육은 피해자 지원 등 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해 지원가능
- 종사자 1인당 연간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은 40만원 이하로 집행 가능 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과정 이수 시에는 지원한도액 초과가능
- 센터에서 시행하는 상담원/임상심리전문가/정신건강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등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은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음



${ m I\hspace{-.1em}I}$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의 제출

-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교부 신청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 해당 지자체로 제출(표 참조)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장은 해바라기센터의 장에게 시·도에 제출한 자료를 해당 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센터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해바라기센터의 장이 제출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 교부신청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정해진 기일 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표 참조)

보고사항	보고주체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방법
사업계획서	센터장	시ㆍ도지사	당해 연도 1월 15일까지	ИH
예산교부신청서	시・도지사	여성가족부장관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서면
사업실적보고서	센터장	시・도지사	익년도 1월 31일까지	서면
정산보고서	시ㆍ도지사	여성가족부장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킨
시설 및 종사자 변동사항 등	세티카	시・도지사	설치 및 변동 후 10일 이내	서면 또는
피해자 지원실적	센터장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 단장	매 익월 10일까지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IV

지도점검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조치

1

지도·점검

- 시·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은 해바라기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공동으로 소관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 경찰청의 지도점검 분야는 수사분야에 한하며, 아동형은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예산 조치

가. 국고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나. 교부결정의 취소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V

참고: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급여 기준

호봉 책정 기준

- 호봉별 연간급여 총액 기준표의 적용으로 인해 수당을 포함한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6년의 기본금액과 수당의 총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2016년의 기본금액과 수당의 총액 대비 인상폭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 5% 초과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센터의 장은 시·도지사와 협의
 - ※ 2016년 기본금액은 기본급, 식대, 상여금을 의미
 - ※ 수당은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근속수당을 의미 (연가보상비는 기준에서 제외하며, 센터 자율 지급 원칙)
- o 호봉은 센터 근무연수와 경력을 인정한다.
- O 원칙적으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을 인정한다.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경력자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따라 초임 호봉을 획정한다.
 - 해바라기센터 근무경력(군복무 경력포함): 100%
 - 여성아동청소년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등) 관련시설(상담소, 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병원, 간호사 및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경우 병원 수련, 심리치료기관 등) 근무경력: 80%
 - 그 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분야 경력, 공무원경력 : 50%
 - 석사 1년, 박사 수료 2년(석사를 포함하여 총 3년)의 호봉을 추가 산정(2017년
 이전 채용자) * 2018년 이후 신규 채용자부터 미적용
 - ※ 행정직원은 위의 예에 따름(센터 100%, 여성아동폭력 시설 근무경력은 80%, 그 외 시설, 민간기업 등의 행정경력 50% 인정)
- 호봉 정기 승호일 기준 : 매월 1일
-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의 호봉 지급액은 본인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퇴직금은 제외한다).



2 유의사항

- ㅇ 호봉기준표는 사업연도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다.
- 호봉기준표는 기본급과 센터 근무형태에 따른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등을 포함한 단순한 임금지급 가이드라인 으로 상한선 혹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시·도지사 및 센터의 장은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하에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신규 채용자는 기존 근무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센터별로 권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의 수당 권고금액을 참고하여 센터 내부지침 또는 근로계약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첨부된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시급 통상임금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 이상 근로자 중 근무 상황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통보만 하여도 된다.



3 수당 권고 금액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상근종사자)	지급액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	월 봉급액의 100% (연 2회, 50%)
직책수당	상근소장, 부소장	월 100천원
(취심구경 	기타 팀장	월 50천원
근속수당	2년 이상 근무한 상근 종사자	(2년 이상)월 50천원 (5년 이상)월 70천원 (10년 이상)월 100천원
회계수당	회계업무 수행자	월 30천원
업무대행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타 1월 이상 결원 종사자의 업무 대행시	(1인이 대행)월 50천원 (2인이 대행)월 30천원
연가보상비	전 종사자	12월 31일 현재 월봉액×1/30× 연가보상 일수(10일 이내)
추가근무수당 등	전 종사자	근로 관계 법령에 따름 (각 근무형태에 따른 고정적인 근무 시간을 초과해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 수당 권고 금액은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음
- ** 업무시간 외 비상호출 사항은 추가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센터의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 판단이 필요하며 수탁병원의 지침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4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

(단위 : 원)

호봉	부소장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간호사, 상담원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1	32,360,000	31,050,000	26,330,000	22,590,000
2	32,990,000	31,830,000	26,990,000	23,200,000
3	33,620,000	32,610,000	27,650,000	23,810,000
4	34,250,000	33,400,000	28,300,000	24,420,000
5	34,900,000	33,920,000	28,740,000	24,850,000
6	35,540,000	34,450,000	29,180,000	25,250,000
7	36,170,000	34,970,000	29,610,000	25,670,000
8	36,800,000	35,400,000	30,030,000	25,970,000
9	37,450,000	35,810,000	30,470,000	26,310,000
10	38,080,000	36,240,000	30,890,000	26,630,000
11	38,720,000	36,660,000	31,310,000	26,940,000
12	39,350,000	37,090,000	31,740,000	27,260,000
13	39,990,000	37,520,000	32,150,000	27,570,000
14	40,640,000	37,930,000	32,590,000	27,900,000
15	41,270,000	38,360,000	33,010,000	28,210,000
16	41,910,000	38,790,000	33,430,000	28,530,000
17	42,540,000	39,210,000	33,860,000	28,850,000
18	43,190,000	39,650,000	34,280,000	29,170,000
19	43,820,000	40,060,000	34,710,000	29,490,000
20	44,450,000	40,480,000	35,140,000	29,800,000

^{*} 야간 근무직군은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호봉별 연간 총액 기준표의 5% 범위 내에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상향·적용할 수 있음

^{*} 근무형태에 따른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됨

06

보고 및 관련 서식

.....



[서식 9] 보조금 신청(1)

○○○년 ○/4분기 사업비 신청서

사 업 명	ㅇㅇ센터						
	사업목	적					
사업개요	운영기	간					
	사업장:	소					
	총예신	<u>}</u>			천원		
소요자금 신청내역	교부신청	형액		천원(2/4분기)			
	자부담'	액					
	병 원 (기관명				대 표 자 (기관장)		
운영기관	주	소					
현 황	전 :	화		FAX		E-mail	
	담 당	자		직 책		연락처	

상기와 같이 ○/4분기 센터 위탁사업비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센터장(인)

시 · 도지사 귀하



보조금 신청(2)

○○○○년 ○/4분기 센터 운영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액	산 출	산 출 근 거		
계					
인건비	000	상담원간호사행정원	000천원×1명×3월= 000천원×1명×3월= 000천원×○명×3월=	000	
관리 운영비	000	• 운영위원 수당 • 회의비(간담회 등) • ㅇㅇ	000천원×00명×0회= 00천원×10인×0회= 00천원×○명×0회=	000	
사업운영비	000	・	0000천원×00회= 0000천원×00회= 0000천원×00회=	000	
시설비	000	• ОО H] • ОО H]	0000천원×00회= 0000천원×00회=	000	
잡지출	000				
예비비	000				

□ 기태	∤ 센터운영	관련	건의사항
------	--------	----	------

0



보조금 신청(3)

○○○년 ○/4분기 사업비 정산 보고

I. 人	 업개	요(?	가리	ᅣ히)

		목적	:
--	--	----	---

□ 사업기간 : 20 .1. 1~12. 31

□ 주요사업내용 :

Ⅱ. 위탁사업 정산 및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총 예산	기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비고
총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잡지출						
예비비						

[※] 기교부액 및 집행액은 분기별 누계로 작성



2. 지출일자별 내역

지출일자	지출비목	지출액(원)	지출결의서번호

- ※ 1) 지출일자는 통장 출금일자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2) 지출결의서번호는 사업비 지출을 위한 의사결정행위(결재)의 일련번호임

3. 통장 입·출금 내역(사본첨부-원본대조필 날인)(별첨)

상기와 같이 ○/4분기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센터장 (인)

시 · 도지사 귀하

붙임: 1. 예비비 사용조서

2. 과목 전용조서



[붙임 1] 예비비사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단위 : 원)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용내역



[붙임 2] 과목전용조서

과목전용조서

(단위 : 원)

			и о		저요애	취애	저요		위 : 원)
관	항	목	전 용 년월일	예산액(1)	전용액 (2)	현액 (1)+(2)	전 용 사 유	내 역	비고



[서식 10] 연도별 실적 보고 서식

○○○ 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I. 사업개요

1. 사업명

0

2. 주요 사업내용

0

0

0

Ⅱ. 위탁사업 정산 및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센터 운영비				
기타 보조금				

ㅇ 센터운영비 과목별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총 예산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인 건 비				
관리운영비				
사 업 운 영 비				
시 설 비				
잡 지 출				
वी धो धो				



2. 예산조정 내역

(단위 : 천원)

비타니어대	ul 0	예신	···	▼ ™ 에	HHHIO	ᄉ᠐ᅵᅵᆉ
세부사업명	비목	당 초	변 경	조정액	변경사유	승인사항

※ 승인사항: 운영지침에 의거 여성가족부(시·도) 승인 또는 자체 조정(자체조정시 내부 품의를 거칠 것) 등으로 기재

3. 지출일자별 내역

지출일자	지출비목	지출액(원)	지출결의서번호

- 1) 지출일자는 통장 출금일자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2) 지출결의서번호는 사업비 지출을 위한 의사결정행위(결재)의 일련번호임
 - 4. 통장 입·출금 내역(사본첨부-원본대조필 날인)

Ⅲ. 사업 운영 결과

1. 사업추진 현황

세부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내용)

[※] 추진실적 내용은 추진일시(기간), 참석인원, 사업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2	자처	분석	•	평기	ŀ

가. 잘된 점(우수사례)

- 0
- 0
- 0

나. 미흡한 점

- 0
- 0
- 0

3. 사업추진 상 애로점 및 건의사항

- 0
- 0
- 0

4. 기타 사항

가. 연구실적(실적 있는 경우만 기재)

나. 언론보도사항

언론보도일시	매 체 명	주 요 내 용	보고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여성가족부 지원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니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내담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및 의료 지원,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 등 업무 지원에 사용됩니다.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국적, 센터 인지경로, 거주지		내담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및 의료 지원,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등 일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센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여부, 상담내용		내담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및 의료 지원,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기간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사법률지원 등 일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외국인등록번호	내담자의 의료지원,	내담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및 의료
주민등록번호	수사법률 지원	지원,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기간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고, 수사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처리됩니다.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데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병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고, 수사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처리 됩니다.



○○○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료지원, 수사 법률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ㅇㅇㅇ 센터장 귀중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수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 필수)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국적, 주소	내담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내담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입력 및 사후관리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법적기간(30년)이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까지

[※] 위 동의 안내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 상담 등 연계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선택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직업, 가족사항, 영상기록물	내담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내담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입력 및 사후관리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법적기간(30년)이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까지

- ※ 위 동의 안내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 상담 등 연계 지원 등 일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의 개인정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 등 업무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장애여부, 상담내용	내담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내담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입력 및 사후관리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법적기간(30년) 이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까지

[※] 위 동의 안내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 상담 등 연계 지원 등 일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 위와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4.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외국인에 한함)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외국인등록번호	내담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내담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입력 및 사후관리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법적기간(30년) 이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까지

[※] 위 동의 안내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 상담 등 연계 지원 등 일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5.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료법 제22조,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됩니다.

개인정보 항목	처리사유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의료지원, 수사지원 등	의료법 제22조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

[※] 위의 주민등록번호는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고, 수사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처리됩니다.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 받는자의 보유기간	동의여부
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지원	성명, 연락처 등	00년	동의함 ㅁ 동의하지 않음 ㅁ
○○경찰서	수사 지원	성명, 연락처 등	00년	동의함 ㅁ 동의하지 않음 ㅁ
ㅇㅇ법원	재판 업무 지원	성명, 연락처 등	00년	동의함 ㅁ 동의하지 않음 ㅁ

[※] 정보주체는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2017년 월 일

본인성명(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

○○ 해바라기센터



[서식 12-1] 아동 · 청소년용

센터이용 동의서

본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치료에 필요한 검사와 심리치료 및 기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참여하겠습니다.
- 2. 센터 이용 시 처음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도착한 이후 초기면담부터 전 치료과정을 녹화함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3자제공 동의서 중 영상기록물 관련 내용과 중복됨)
- 3. 센터 이용 후 해당 피해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성폭력 등 피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 전체를 자부담합니다.
- 4. 피해아동/청소년의 가족도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반응과 대처가 이후 피해아동/청소년의 치료와 회복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 5. 센터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2년 동안 추후 경과나 상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으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 6. 센터 이용 또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 다른 기관 등에서의 중복지원 여부를 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설명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아동청소년〉생 년 월 일:

성 명: 인

〈보호자〉 생 년 월 일 :

성 명: 인



[서식 12-2] 성인용

센터이용 동의서

본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참여하겠습니다.
- 2. 센터 이용 시 초기면담부터 치료과정을 녹화함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3자제공 동의서 중 영상기록물 관련 내용과 중복됨)
- 3. 센터 이용 후 성폭력 등 피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 전체를 자부담합니다.
- 4. 센터에서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추후 경과나 상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으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 5. 센터 이용 또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 다른 기관 등에서의 중복지원 여부를 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성 명: 인



[서식 13]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	----	-----

본인은 20 . . . 로 입사(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센터에 재직하면서 지득한 피해자 개인정보(피해사실 및 지원사항 등 포함)와 관련된 제반 비밀사항 일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제법규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약자 소속	직 위	재직중 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서식 13-1] 통역인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통역인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본인은 외국인 내담자를 위한 통역지원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외국인 내담자의 말을 통역하면서 취득한 내담자 개인정보(피해사실 및 지원사항 등 포함)와 관련된 제반 비밀사항 일체를 내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외국인 내담자의 말을 센터에 충실하게 통역하겠으며, 내담자의 요청사항 등과 관계없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센터에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제법규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통역 연계기관	
이름	(인)
생년월일	



[서식 14-1] 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양식

이용 만족 평가 설문지

작성자	본인(),	보호자()	센터 방문	횟수	()회	
받은 서비스(중	복체크)		상담()	, 의료	(), 수시	(), 법률(), ~	심리치료()

다음 설문지는 본 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원받은 서비스에 해당되는 문항에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1. 전체 서비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센터의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센터의 위치나 교통편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직원들은 친절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1	2	3	4	5
귀하에게 필요한 안내나 정보를 잘 제공받았습니까?	1	2	3	4	5
지원 받은 서비스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2. 상담 서비스	해당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상담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원하는 만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셨습니까?		1	2	3	4	5

3. 의료 서비스	해당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진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진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까?		1	2	3	4	5

4. 수사·법률 지원서비스	해당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센터 경찰의 수사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진술녹화, 수사와 관련된 면담 등)		1	2	3	4	5
법률 지원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법률 정보제공 및 상담, 재판과정 지원 등)		1	2	3	4	5



5. 심리 평가 및 치료지원	해당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심리지원서비스(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1	2	3	4	5
사건과 관련한 후유증이 완화되었습니까?		1	2	3	4	5

- 6. 다른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본 센터의 이용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7. 센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소감이나 의견(좋았던 점, 개선사항, 요구사항 등)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서식 14-2] 동행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양식

동행서비스 이용 만족도 평가 설문지

작성자	본인(),	보호자() 서비스 이용 횟수 ()회		
동행서비스 유형(중복체크) 지료(), 문화(), 수사·법률(), 의료(), 기타(
동행서비스 방법((중복체크	1)	차량(), 버스·지하철(), 택시(), 기타()		

다음 설문지는 본 센터의 동행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하시는 시간대에 동행서비스를 받았습니까?	1	2	3	4	5
2. 동행선생님은 친절하였습니까?	1	2	3	4	5
3. 시간에 맞게 동행선생님은 오셨습니까?	1	2	3	4	5
4. 치료나 후유증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2	3	4	5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 동행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6	동행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북편하	전으	있었습니까?

1	매우	그런다	\bigcirc	그런다	(3)	보통이다.		없느 :	퍼이다	(5)	저처	었었다
(I)	- II. I	- 5U	(4)	<u> </u>	())	T 0 9 9	(4)	Hli '	5,10,101	(ノ)	31104	ロスススピー

불편했다면 어떤 부분이 불편하였나요?

7. 동행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소감이나 의견(좋았던 점, 개선사항, 요구사항 등)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서식 15] 근로계약서 표준안

근로계약서

사용자(이하 '센터'라 함)와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포괄임금 제도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센터명	대표전화
사용자	소재지	
(센터)	대표자	사업자
	9131271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근로자	주 소	<u> </u>
(직원)	• 개인정보	활용동의 :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활용에 동의함.
		※ 본인동의확인 (인)

제1조【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 ① '직원'의 근무장소는 ㅇㅇ해바라기센터로 하며, 담당업무는 ㅇㅇㅇ로 한다.
-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직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 ①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다.
- ② '직원'이 '센터'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③ 계속 근로 2년 이하의 '직원'은 제1항의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단, '센터'의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위탁받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3조【근무형태】

① 365일 24시간 가동되어야 할 사업특성상 '직원'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교대근무 □ 기타(매월의 근무표에 따름)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직원'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

-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3조에 따른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고
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			※ 야간, 교대근무자의
교대근무자	[주] [야]	[취 [야]	1일 8시간 초과근로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함.
기타			

- ③ 휴게시간은 제2항과 같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사정상 휴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직원'의 재량에 따라 같은 시간을 휴게할 수 있다.
- ④ '센터'의 사업특성 또는 '직원'의 사정으로 고정적인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근무단위기간의 7일전까지 '근로일별 근무표'를 확정하여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으로 한다.

제5조【휴일】

- 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② 교대근무자 등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 중 휴무하는 1일을 주휴일로 한다.



제6조【휴가】

-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②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법정휴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③ 경조휴가 등 기타 약정휴가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임금】

- ① 임금의 결정은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를 참조할 수 있다.
- ②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회계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포괄임금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항 목	금 액	비고
	기 본 급		
Ell	직책수당		
통상 임금	근속수당		
	회계수당		
	기타수당		정액급식비 원, 교통보조비 원
연장	근로수당		월평균 시간 × 통상시급 × 1.5
야간	근로수당		월평균 시간 × 통상시급 × 0.5
휴일	근로수당		월평균 시간 × 통상시급 × 1.5
	합 계		각종 세액, 사회보험료 등 공제 전 금액임.
통	상시급		월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③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해 설과 추석 각각 ()를 지급한다.
- ④ 임금은 매월 ()일(산정기간 : 매월초일부터 말일)에 '직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제8조【퇴직급여】

- ①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한다.
- ② 퇴직급여는 '센터'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설정한 제도에 따른다.
- ③ 퇴직급여 중간정산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9조【수습기간】

- ①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개월) 까지로 한다.
- ②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로 한다.
- ③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④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 적성 부적합, 근무태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 초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 '센터'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률, 해바라기 센터 사업안내, 센터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상호간의 확인사항】

- ① '센터'는 본 계약서상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수습기간 등의 근로조건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근로조건을 '직원'에게 충실히 설명하였음. (확인 날인)
- ② '직원'은 '센터'로부터 본 계약서상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수습기간 등의 근로조건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근로조건 등을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확인 서명)

'센터'와 '직원'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며, '센터'는 본 계약서 사본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한다.

20 . . .

(사용자) (인)

(근로자) (인)



【참고 1】

해바라기센터 사업신청서

법 인			대표	 자		
설립일			(생년월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t (FA)	_		
연간예산	합계	운	영체부담	정부지	원	기타
(단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목적						
위탁신청취지						
사업계획서	별 첨					
해바라기센터운영	해바라기센터운영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자(대표)			(직인)
		(시	・도지사)		귀하	
2. 사업 3. 사업 4. 기타]허가증(사본) 및 운영기관 현황(사 계획서 1부(소정영 서류 ド서, 기관 및 종사지	·업실 양식)	적 포함) 1투		오일간	지보도사항)



운영 기관 현황

1.	운영기	관명(법인)	:
----	-----	--------	---

2. 소 재 지:

3. 설립목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주요경력	비고

5. 구성원수 : 명(인적조직표 첨부)

6. 설립 및 주요연혁(간략히)

설 립 일 자	내용
예) 1972. 4. 8	ㅇㅇㅇ부 ㅇㅇ법인 설립허가에 따라 법인 설립

7. 주요사업내용

※ 사업실적 제출기관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업무에 한하여 작성



- 8.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 2016년 예산 및 결산자료
- 9. 대표자 및 시설장 인적사항 등

가.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나. 센터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다. 전문인력 보유현황(예시 : 성폭력·가정폭력관련 상담, 의료, 법률 등 전문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 첨부서류 : 이력서, 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연구논문 등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법인 및 종사자의 수상실적 및 주요일간지 보도사항(최근 2년간)



해바라기센터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의 목적 :

3. 운영계획

*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 ㅇ 조직 및 인력 편성 운영계획
- ㅇ 센터 시설 설치 계획(설치위치 포함)
- ㅇ 피해자(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구체적)
- 피해자의 정신과·산부인과 등 우선 치료 서비스 및 운영기관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피해자 진료 대기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인근 병원과의 연계 서비스 체계 확립
- 피해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정신과적 치료
- ㅇ 피해자 법률지원 계획
- ㅇ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원 연계망 구축 계획(구체적)
- o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교육계획
- ㅇ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계획
- ㅇ 기타 추가 사업 등



4. 사업비의 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총 계			

5. 사업비 내역

구 분	지출비목	사업비(천원)	산출근거
총계			

6. 기 타(특기사항) : 상근인력 확보방안 포함



【참고 2】

사업자 선정기준

편기원다	ᆏᆌᆒᆼ	ull T-J		세	부배견	덤		드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Α	В	С	D	Е	득점
	○ 응모기관의 관련활동 및 사업 경력, 전문성	10	10	8	6	4	2	
1. 사업수행 능력 (30)	○ 응모기관(연계병원 등 포함)의 전문 인력 등 자원 동원 가능성	10	10	8	6	4	2	
(30)	○ 사업자(법인)의 재무상태의 안정성 및 건전성	10	10	8	6	4	2	
	○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2. 조직(인력) 및	○ 센터장(소장)의 전문성·사업수행 능력	10	10	8	6	4	2	
시설계획 (25)	○ 시설규모 및 설치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 센터설치 장소의 지리적 위치의 적정성	5	5	4	3	2	1	
	○ 의료지원 연계 구축 적정성	10	10	8	6	4	2	
4.	○ 피해자 법률지원, 피해자보호 연계망 구축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사업 운영계획 (35)	○ 홍보·교육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5	5	4	3	2	1	
	○ 전문가 그룹 및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5. 기타(10)	o 지자체 연계 및 위탁기관 출연	10	10	8	6	4	2	
	합계(100)	100	100	80	60	40	20	

07

업무 참고자료





【참고 1】

Ι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아동 포함, 이하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 지원 및 센터운영과 관련되는 제반업무를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 지원 및 행정과 관련된 각 센터의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고,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 단체,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해바라기센터의 자료를 관리·열람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2. '시스템관리자'이라 함은 중앙지원단에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
- 3. '기관관리자'라 함은 시스템관리자로부터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여성 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 4. '중앙지원단사용자'라 함은 시스템관리자로부터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중앙지원단의 직원을 말한다.
- 5. '센터관리자' 및 '센터담당자'라 함은 시스템 관리자으로부터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해바라기센터의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 6. '센터사용자'는 센터 담당자로부터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센터 내 모든 종사자를 말한다.



- 7. '개인정보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 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 9.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 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 10. '접속기록'이라 함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 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 제4조(운영 기본원칙 및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스템 접속은 시스템 관리자 또는 센터 담당자에 의해 권한을 승인 받은 자 이외에는 누구도 접속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② 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의 공개 또는 외부기관에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다.
- 제5조(시스템관리자의 임무) ①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담당한다.
 - 1.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가. 사용자에 대한 권한관리
 - 나. 시스템 관련 질의응답 및 기타 요청사항 수행
 - 다. 시스템 내 게시물 관리 등
 - 2. 시스템 사용 교육
 - 가.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교육
 - 나. 해바라기센터 통계 관리 및 교육
 - 다. 사용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 3. 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
 - 가. 전산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나. S/W, H/W의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다. 통신망,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라. 시스템보안 관리체계 구축 · 유지에 관한 사항
- ② 시스템 관리자는 제 1항의 기능 중 범위를 정하여 외부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업체 위탁 시 자료유출 방지, 인원통제 등 기술적·관리적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기관관리자의 임무) 기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여성가족부
 - 가. 시스템 운영 예산 및 기본 방향 수립
 - 나. 전국 센터 통계 등 행정사항 관리
 - 2. 지방자치단체
 - 가. 관내 해바라기센터 통계관리
- 제7조(중앙지원단사용자의 임무) 중앙지원단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1. 시스템 내 게시물 관리
 - 2. 전국 해바라기센터 통계 및 인사 등 행정사항 관리
- **제8조(센터관리자, 센터담당자 및 센터사용자의 임무)** ① 센터관리자, 센터담당자 및 센터사용자는 각 센터 내에서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센터관리자
 - 가. 센터 내 시스템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총괄
 - 2. 센터담당자
 - 가. 해바라기센터 사용자의 계정 부여
 - 나. 행정사항(인사 자료, 문자발송 시스템 등)관리
 - 다.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현황 변경사항 관리
 - 라. 해바라기센터 사용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 3. 센터사용자
 - 가. 피해자 지원 관련 의료·상담·치료·연계 등의 업무에 따른 정보 입력 나. 기타 센터 유영에 관한 정보 입력 및 관리



- ② 사용자는 입력된 자료에 대하여 오류여부를 확인하고, 오류 사항 발견 즉시 수정 입력하여야하며, 고의로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하거나 이중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8조1항제3호나목의 인사·회계·급여·물품관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시스템접속방식)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하다.
- **제10조(사용자 관리)**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사용자 승인 기준에 의해승인권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센터담당자는 사용자의 입·퇴사 등으로 인하여 종사자 정보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 사용자 정보 및 권한을 변경하고,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스템 관리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센터담당자의 입·퇴사 등으로 인하여 종사자 정보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 센터는 그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④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제한 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 1.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2.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 3. 시스템에 유해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경우
 -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 5. 로그인 정보를 도용하여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로그인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 6. 사용자 정보를 허위로 입력했을 경우
 - 7. 센터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필요 이상의 많은 사용자를 신청한 경우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



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한다.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 시도를 탐지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센터관리자 및 센터담당자 포함)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특정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수집 범위는 피해자 지원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내역은 〈별표 3〉과 같다.
- 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⑥ 시스템관리자 및 기관관리자는 민원사항 처리 및 지도점검 관련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 ⑦ 각급 기관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2의 개인정보 접근 기준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보안의식 제고) ①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책임자 및 사용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4. 사용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은 사용자 별로 발급하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시스템관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사용자(센터관리자, 센터담당자포함)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보안) ① 센터관리자 및 센터담당자는 시스템 관련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대책
 - 2. 관련 자료의 안전보관을 위한 대책으로 시건장치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②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2. 전용 소각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제14조(시스템 운영) ① 시스템은 사용자의 원활한 사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365일 항시 운영되어야 한 다. 다만,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스템의 가동을 정지 할 수 있다.
 - 1. 국가 통신망 마비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2. 바이러스, 해킹 등 심각한 사이버위협이 발생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시스템 개선·보수·증설 또는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가동을 정지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운영 중단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 1. 시스템 운영중단 사유, 기간을 명시하여 시스템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업무



연락 기능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2. 시스템 운영중단의 사안이 시급한 경우 이외에는 3일 전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1개월 이상 시스템이 중지될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 제2항에 의한 통지 외에 사례 정보 입력 등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기관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5조(업무개선에 관한 조치) ① 센터관리자, 센터담당자 및 사용자는 시스템의 사용 중 입력항목, 입력방식 등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요구사항의 목적, 변경 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프로그램을 개선 할 수 있다.
- 제16조(파견 경찰관의 정보열람) ①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은 수사팀에서 지원한 사건에 한해 진행 상황과 피해자 지원 사항의 점검을 위해 시스템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등을 외부 또는 수사기관에 유출 할 수 없다.
 - ③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정보 또는 상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또는 수사기관에 유출한 경우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사용자 승인 기준

승인권자	승인대상자
	기관관리자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 1 포베크l 크l 코	중앙지원단 사용자
시스템관리자	센터관리자
	센터담당자
센터담당자	센터사용자

[별표 2]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정보 접근 기준

열람권한	센터	중앙지원단	지방자지단체	여성가족부
피해자정보	0	×	×	×
통계자료	0	0	0	0

[※] 각 센터 에서는 타 센터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지방자지단체는 해당관내 해바라기센터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음

[별표 3]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수록항목

자료명	세 부 항 목
피해자정보	피해자 : 성명, 성별, 국적, 나이,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상담 및 지원 내용 (상담)의뢰인 : 성명, 성별, 나이, 피해자와의관계, 연락처
종사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나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학력, 전공



【참고 2】

II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원장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센터장이 한다.
 - ③ 간사는 센터 부소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성폭력 등에 풍부한 학식과 경력을 갖춘 자 가운데 센터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 등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제5조(결격사유)**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정치인(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의원 등) 또는 정당인(당직자, 선거운동 종사자 등) 단, 병원관계자나 자문을 위한 전문가는 예외로 한다.
 - 2. 경찰대상업소 운영자·종사자 및 관여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4. 기타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시도지사 및 위원장이 판단하는 자
-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 가운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 2. 임기 만료된 경우
- 3. 제5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4. 제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 5.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의 역할)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지역 내 유관기관 협조강화 방안
- 2.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방안
- 3. 사업실적 및 계획, 중점 추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센터 활성화 관련 사항
-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센터명칭, 직원임면관리, 지원대상 및 위탁사업내용, 예산변경 등 센터 운영 관련 중요사항은 의결대상에서 제외되며 관여할 수 없다.
- ③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개인 신상 및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센터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문제에 관여하는 행위
- 2. 수사 중인 사건에 청탁 등 개입하는 행위
- 3. 센터 종사자 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 4. 센터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제9조(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운영 위원회의 유영을 총괄한다.

- ② 간사는 회의개최 일정통지 등 운영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업무일체를 담당한다.
-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되,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의 작성·보관)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개최 · 개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지
 - 3. 의사결정
 - 4. 출석위원의 직 · 성명
 - 5. 안건의 발의·제출·회부·환부 및 철회에 관한 사항
 - 6. 안건 심의·의결사항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참석수당 지급 불가
-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수탁병원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3】

IV-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1 | 목 적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 근거법령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3 기원대상

- ㅇ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 단, 피해자 가족의 의료지원은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증상의 강도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 ※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4 | 의료지원의 범위

-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 포함)
- ㅇ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피부과, 비뇨기과 등)
- ㅇ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



- ㅇ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
 - ※ 낙태로 인한 부검 및 화장 비용 지원 가능
 -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3호에 의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만 가능하므로 그 밖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성폭력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신 장애인으로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및 의료비 지원 가능
-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신체사정) 및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

❖ 응급키트 처치료 지급 관련

- 응급키트 처치료는 응급키트를 시행한 전문의 등 의사 개인에게 병원 내부 지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활한 증거채취 및 응급 진료 협조를 위해 가급적 의사에게 직접 지원토록 노력하여야 함
- 주 : 1.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2.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는 피해자 1인당(개당) 75,000원을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에게 지급
 - 3.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원칙(수사기관·재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발급 가능)으로 하며, 그 용도는 학교·직장·수사·법원 제출용 등에 한정하고 개인 보험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불가

5 | 의료지원 원칙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
- 단순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지원 제외(다만, 내·외과적 손상을 입어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병실이 없거나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 하거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상담원(간호사 등 의료지원 담당자 포함) 의견서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급병실 사용 가능
 - ※ 긴급 시 사유서를 사후에 첨부 가능
 - ※ 상급병실 사용 필요: 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자 또는 심각한 외상 피해,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사건,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가급적 상급 병실을 지원토록 함



- 성폭력피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함(단,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제외대상인 특수상병군 적용 강화)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 특히 성폭력피해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의료비는 의료 급여로 집행한 후 본인부담금 등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서 지원
 - ▶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클리닉도 집행 가능
 -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6 | 의료비 과다청구 해소

- 비급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회기당 15만원 이내로 함(회당 15만원 초과 시 자부담)
 - ※ 비급여 심리치료 지원은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원칙으로 함. 단, 6개월(300만원) 초과 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상담소 등에서 주치의 소견, 내부회의 등을 거쳐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의견서를 첨부한 경우 지원 가능
 - ※ 초기 심리평가 비용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3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100만원(누적금액)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과 내부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500만원(누적금액) 이상 의료비 지급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 적정성 검토 의견을 첨부(단, 외상 치료에 대한 비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값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피해자 등이 긴급하게 구입하여 사용한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하여는 지원(의료기관의 투약 및 조제료는 의료비에 포함)



- 성폭력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영양제, 배변주머니 등 피해자 본인이 우선적 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
- 의료보조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단 임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임차료만을 지원
-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심리 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진료)와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유도
- 한방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분만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외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응급의료지원의 성격을 지니므로 고가의 한방 첩약이나 탕약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의료비 중복 지원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
 - 피해자가 타 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동일 폭력 피해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 및 가족이 성폭력 피해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지원한 비용 전체를 환수할 수 있음
 - ※ 단순 재판결과의 무죄가 아닌 고의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중복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한함
 - ※ 비용 환수 절차: 의료비를 지급한 피해자 지원 기관(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 의료비통장으로 수령인이 지급받은 의료비를 반납하도록함. 의료비지급 기관은 반납 받은의료비를여타성폭력 피해자의료비로활용할수있으며, 집행잔액은 지자체에 반납함
- 피해자가 지원받은 의료비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 환급금으로 환급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급한 기관에 반드시 통보하고 환급금을 반납
 - ※ 본인부담액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은 의료비가 과다지급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7 | 치료보호 지원기간

-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의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 지원 기관과 당해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협의(유선 또는 문서)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의료지원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함.
 - 단, 피해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8 | 치료보호 비용 지원체계

가. 의료비 예산배정(선금급, 개산급)

- 배정대상
 - 시·도, 시·군·구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이하 '피해자 지원기관')
- ㅇ 배정방법
 - 시·도는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도 예산을 배정하고, 설치된 시·군·구는 지원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되, 예산의 일부를 자체 보유 (전체 의료비 예산의 10% 정도)하여 직접 집행 및 시설별 배정 예산의 부족에 대비(예산 배정 규모, 자체보유 규모 등은 관내 의료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판단)
 - 다만, 시·도는 예산 수요 및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이 설치된 시·군· 구의 모든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당해 관할구역 내 거점 상담소 등을 지정하여 예산 배정하거나 직접 집행이 가능함
 - ※ 2~5개 시·군·구를 합하여 거점 기관(상담소 등)을 지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지방비 부담액 중 당해 시·군·구비의 경우 당해 시·군· 구에서 직접 집행토록 조치



-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해당 센터가 속한 의료법인이 아닌 센터로 직접 예산 배정
- 지원기관에 예산 배정 시, 운영비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전년도 의료비 예산 집행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전년도 실적이 없는 상담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정 대상에서 제외 원칙)
 - ※ 시·도는 관할구역내의 치료보호 실적이 특히 높은 상담소를 비롯하여 해바라기센터 및 피해자 진료에 적극적인 대형 '전담의료기관' 등의 예산소요를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배정 또는 보유

○ 집행 및 정산

- 시·도 및 시·군·구, 지원기관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예산을 별도로 운영(집행 내역 사업별 분리 정산·관리)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지급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급은 불가능
 -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담소 등은 필요 시, 해당 예산이 배정된 상담소 등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 지급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치료보호 조치(예산의 수시배정 조치 없이도 지원기관을 통하여 의료비의 과부족분 해소)
 -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원 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배정시기:매 분기 초에 배정
 -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내 피해자 지원기관의 의료비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과부족에 의한 지원 불능, 집행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변경(조정) 배정 조치
 - ※ 시·도는 관내 시·군·구 및 지원기관의 의료비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지역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요구(의뢰)

○ 지원시설의 장은 내담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 자의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를 의뢰



-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치료를 요구
 - ❖ 상담소 등의 '피해 상담 사실 확인(확인서 발행)'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생략
 - ①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진정 등) 접수증 사본을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 제출하거나.
 - ②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 등의 사실 확인(확인서 작성 후 서명)이 있는 경우
 - ③ 피해자가 전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우(해당 병원은 진료기록을 자체 보관하고 상담소 등 혹은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 청구서만 제출)

다. 의료비의 청구

- ① 의료기관(심리치료 기관 포함)에서 청구하는 경우
 - 성폭력피해자 등을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피해자 지원 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청구 [서식 14]
 - ※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및 진료비 명세서 제출 불요
 - ※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 불요
- ②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보전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성폭력피해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보전 청구 [서식 15]
- ③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의 청구
 -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 사용 후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청구
 - ※ 전담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에서 처치 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등 제출 불요
 - ※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는 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해바라기센터를 경유하여 의료진에게 직접 지급



- 일반적인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하지만 피해자 본인은 청구 불가

❖ '성폭력피해상담 사실확인서 등'이란?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 · 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로도 증빙 가능

라. 의료비의 지급

- 지급청구를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집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구비 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치료보호 활성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 기관과의 협조관계에 유의하고,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 피해자 등이 지원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자체로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 지자체는 중복지급 여부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기관이나 관련 분야전문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 여부 결정

마. 정산

○ 의료비 예산을 배정(선급)받아 이를 집행한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집행 내역을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보고(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하고, 시·군·구에서는 이를 자체 집행 내역과 함께 관리

9 | 간병비 지원

가. 목적

ㅇ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간병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 지원



나. 지워대상

- 성폭력피해로「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 ※ 예시) 피해자가 1인 가구, 세대 구성원 중 성인인 구성원이 본인밖에 없는 경우,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기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지원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 가능

다. 지원 내용: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 지원

라, 지워 기가: 최대 1개월

※ 당해 지자체(시·군·구)가 심의를 통해 피해정도, 가정환경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마.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기준 단가 참고)

※ 불가피하게 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심의 필요

	¬ ы	1일 기준 단가(예 시)						
	구 문	종 일	시 간 제					
바이	일 반 단 가	8만원	5만 7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병 원	특수단가*	8만 5천원	6만 3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 ※ 특수단가 적용 기준 : ①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 상태인 경우
 - ② 응급실,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 ③ 그 외 특수단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소견서 첨부)
-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 지양
- ※ 간병비 예시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함

바. 지급 절차

- ㅇ 가병비 지원 안내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의 장, 시·군·구에서 성폭력 내담자에게 간병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 안내



ㅇ 간병비 청구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간병 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간병비를 보전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관할 시· 군·구에 피해자 부담액에 대한 간병비 보전 청구 가능
- 제출서류
 -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뷔서식 17
 - 진료비(간병비) 계산서, 입원 확인서 각 1부
 - 1인 가구·한부모 가정·조손 가정·장애부모 가정 등 관련 증명서류
 -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확인서 예시)

ㅇ 가병비 지원

- 지급청구를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집행한 후 관계 증빙 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간병비는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원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간병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단,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가족, 친인척은 제외함



- 지급, 화수 규정

지 급

최근 6개월 이내에 간병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 처리(단,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지나도 지급 가능)

화 수

- ▶ 간병비의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하 방법으로 가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 오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
 - 사유서 제출 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6개월이 │ ▶ 시·군·구청장은 간병비 회수결정서 및 납입 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톳보
 - ▶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 ㅇ 간병비 지원은 간병비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능력 부족,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 에게 직접지원 가능(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추가 확인 및 실태관리 철저 요망)
 - 보인부담 후 보전이 원칙이며,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 불가피하게 가볏비를 우선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우선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워 여부 결정

비밀준수 의무 10

○ 현행「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준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준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상담소 등의 종사자는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특히,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11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및 간병비 지원 실적을 보고 서식[서식 16]에 의하여 상반기 실적은 2018년 7월 31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필요(특히 경찰서, 의료기관 등)
 - 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경찰,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서도 관련 절차 숙지 및 안내에 유의
 - 의료비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 5% 이내에서 시·도별 관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 대한 홍보비로 사용가능
 - 의료비 혹은 간병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배정 총액 내에서 조정 가능



[서식 16]

피해자 치료보호 실적

1. 피해자 유형 및 연령

(단위: 명)

OIP.				원 대성 다 본인				피 해 유 형 피 해 시 연 령						의료지원기간						
의료 기관명	합계	소계	비 장애인	장이	개인 정신	피해자 가족	합계	강간	추행	기타	합계	유 아 (7세 미만)	어린이 (7~ 13세)	청소년 (13~ 19세)	성 인 (19세~ 65세)	성 인 (65세 이상)	합계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합 계												-10/	10-11/	10.11/	00-11/	*10/				

[※] 의료지원 대상 소계와 나머지 합계는 모두 일치하여야 함

2. 진료비용 및 간병비용 지원

(단위: 건, 천원)

			진	료	비	용			기버	пΙΘ	
의료기관명	7	ᅨ	일	반	정 (<u></u> 고	응급키	트사용	간병 비용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 ※ ① 의료비 집행실적과 건수 및 금액은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와 일치하여야 함
 - ② 치료비용은 본인부담액만 기재(건강보험부담금 제외) 진단서 발급비는 진료비용에 포함하여 기재
 - ③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건수'는 "1. 피해자 유형 및 연령"란의 합계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④ '비고'란에는 '전담의료기관' 혹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원스톰, 해바라기 등)' 등 여부를 기재

3. 성폭력응급키트 사용현황

(단위: 개)

		배 부	기 관			배누					
١	시·도				배 부 량	:		사 용 량		비고	
	\\ \ - _	배부기관명	전화번호	총계	전년도 누계	당해년도계	총계	전년도 누계	당해년도 계	잔량	- ا
		합 계									

- ※ ① 전년도 누계 배부량 및 사용량은 전년도 보고와 일치하여야 함
 - ② 증거채취용으로 피해자에게 사용한 경우 이외에 교육용, 연구용, 견본용 등으로 배포 또는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량'에 포함



4. 간병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Ī	해자 특	성		피해자 가족 현황					피해자의 연령					지원금액별 현황			
지원 기관명	합계	비 장애인	장애인	합계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 부모 가정	기타	합계	유 아 (7세 미만)	어린이 (7~ 13세)	청소년 (13~ 19세)	성 인 (19세~ 65세)	성 인 (65세 이상)	합계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oo 상담소																		
DD 센터																		

[※] 합계는 모두 일치하여야 함



[확인서 예시 1]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발행

확 인 서

지료보호대상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수사·재판 상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상기 인은 성폭력 피해자로 상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끠해 개요			
ㅇ 피 해 일 :	년	월	일
○ 피해 유형 : [□강간	□성추행	□기타
ㅇ 피해 내용 :			
□ 확 인 자			
0 소 속:			
○ 성 명:		(서)	명 또는 날인
○ 저하버ㅎ:			

()장 (관인)



[확인서 예시 2] 경찰관 작성

확 인 서

치료보호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 수사ㆍ재판 상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상기인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성폭력) 범죄의고소(진정)인임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 고소(신성)일:	년 철	릴 일
□ 피해 개요		
0 피해일: 년	월	일
○ 피해 유형 : □강간	□성추행	│ □기타
ㅇ 피해 내용 :		
□ 확 인 자		
0 소 속:		

직 급: 정 명:

ㅇ 전화번호 :



[서식 17]

		간병	비 지급선	신청서							
간 병 인	성 명			생닌	크월일						
지원대상자	주 소			(연락처	! :)					
(피해자)	간병인 지	원 사유									
피해발생 시기			년 월								
간병인 이용 기간		년 월		월 <i>내역 명</i>	일 (총	시간)					
총 간병지원비 (자부담분)			(^1 -	<i>417 0</i>	<i>건)</i> 원						
입원	717104		주 길	_							
의료기관	기관명		연락치	1							
간병인	성 명		간병교육 수	료여부							
	금융기관 및	지점명									
간 병 비 지급 계좌	계 좌	번 호									
시ㅂ 계차	예 금	주									
성폭력 피해	자 회복을	위한 간병!	비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생	년월일 :								
역 락 처 :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장 귀하								
. 처ㅂ니ㄹ											

• 첨부서류

- 1. 진료비(간병비) 계산서 또는 입원 확인서 1부.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 2. 기타 지원대상 증명 서류(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1부
- 3.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1부. 끝.



2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 | 정의

- 성폭력 증거채취 등을 위한 응급 의료용품
- 의료기관 등에 무상 보급
 - ※ 2004. 10. 부터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에 따른 처치료를 의료기관에 지급

2 | 구성 물품

구분	구성물품 목록	수량
1 다니게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3장)	1부
1단계	관계인 동의서(3장)	1부
2단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3장)	1부
	겉옷(Outer Clothing)봉투	2개
	속옷(Inner Wear)봉투	2개
الداعات	이물질(Foreign Material) 봉투	1개
3단계	종이보	1개
	종이팬티	1개
	비닐소독장갑	1개
	성폭력 피해자 신체의 부스러기 채취(DEBRIS COLLECTION)	
	종이봉투	1개
	손톱깎이	1개
4단계	스크럽 도구	1개
	손톱수거 표시용 왼쪽·오른쪽 라벨(주황색)	각 1개
	종이보	2개
	비닐소독장갑	1개



구분	구성물품 목록	수량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STAIN COLLECTION)							
	종이봉투	1개						
erkall	증류수	1개						
5단계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4세트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4개						
	비닐소독장갑	1개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PUBIC HAIR COMBINGS)							
	종이봉투	1개						
6단계	り リ	1개						
	종이수건	1개						
	비닐소독장갑	1개						
	생식기 증거 채취(GENITALIA SWABS AND SMEARS)							
	종이봉투	1개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4세트						
7단계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4개						
	슬라이드글라스	1개						
	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1개						
	비닐소독장갑	1개						
	항문직장 내 증거 채취(ANORECTAL SWABS)							
	종이봉투	1개						
8단계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2세트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2개						
	비닐소독장갑	1개						
	구강 내 증거 채취(ORAL SWABS)							
	종이봉투	1개						
9단계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4세트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4개						
	비닐소독장갑	1개						
	혈액 채취(BLOOD SAMPLE)							
1051 -11	종이봉투	1개						
10단계	EDTA Tube	3개						
	비닐소독장갑	1개						



구분	구성물품 목록	수량
	소변 채취(URINE SAMPLE)	
	종이봉투	1개
11573	소변통	2개
11단계	지퍼백	1개
	부착 테이프	2개
	비닐소독장갑	1개
12단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3장)	1부
	경찰보관용 봉투(상자 뚜껑 겉면 상단 부착)	1부
	수술용 고무장갑(Latex Surgical Gloves(Gamma 멸균)) (진찰용)	1개
	일회용 질경(7단계에서 사용)	1개
기타	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주황색)	3개
	생물학적 위험(BIOHHAZARD) 표시 라벨(주황색)	1개
	마스크	2개
	포장 상자	1개

3 성폭력 응급키트의 적정한 배분 및 관리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응급키트의 배포 및 사용현황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용실적에 비하여 과다 배포되었거나, 치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등 응급 키트 사용이 예상되지 않는 의료기관 등에 배포된 키트는 회수하여 적정하게 재배분(종합병원 및 산부인과 위주 보급)
 - 배포 후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채 성폭력상담소 등에 보관된 키트는 회수 조치하고, 장기간 사용실적이 없는 의료기관 등에는 1~2개 기준으로 비치 (과다 비치하지 않도록 조치)
- 응급키트 처치료(개당 75,000원) 지급 및 배포현황 반기별 파악
 - 시·도에서는 시·군·구를 통해 병원별 응급키트 사용량 및 처치료 지원내역 파악 등 사용실태 점검



- 사용실적이 저조한 병원에 대해서는 최소 보관분(1~2개)을 제외한 잉여 응급키트를 시·군·구에서 회수, 관내 부족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배분
- 시·도에서 여성가족부로 응급키트 신청시 기준 강화
 - 시·도는 분기별 시·군·구 사용실적 점검결과, 잔량이 전체 배포 수량의 10% 미만일 경우 추가 소요량 신청
 - ※ 시·도 잔량이 10% 이상일 때는 시·군·구별 수급조절(시·도)
- 응급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
 - 응급키트는 의사의 지시 없이 상담원 등이 자의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됨 ※ 다만, 키트를 통한 증거 채취 과정에서 상담원 등 비의료인은 의료행위가 아닌 단계 (1, 3, 4, 5, 6, 12단계)만 실시할 수 있음

단 계	내 용
1단계	동의서 작성
2단계	진료기록 작성
3단계	겉옷, 속옷, 이물질 수집
4단계	신체 부스러기 채취
5단계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
6단계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
7단계	생식기 증거 채취
8단계	항문 직장 내 증거 채취
9단계	구강 내 증거 채취
10단계	혈액 채취
11단계	소변 채취
12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 응급키트 사용 후 사용되지 않은 잔여물과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검체,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은 키트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사용 후 키트 상자와 기타 증거물 등은 담당경찰관에게 인계한다.
- 의료기관 보관용 기록(1, 2, 12단계)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1항 제9호 규정에 준하여 3년간 보존



3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관리

1 시업개요

ㅇ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관리

2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가. 지정대상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또는 보건지소,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나. 지정신청 방법(규칙 제13조)

- ①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서 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 참조(전자문서 포함)
 - 신청서 첨부 서류(전자문서 포함)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지정대상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검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 수리시 검토사항
 - 지정대상 기준 적합 여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③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별지 제9호 서식]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관

다. 취소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27조제3항제1~3호의 전담의료기관 취소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의료법」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지정현황(343개소)

(2017년 9월 기준)

시·도별	지정기관수	시 · 도별	지정기관수
서 울	50	강 원	36
부 산	23	충 북	7
대 구	10	충 남	22
인 천	12	전 북	20
광 주	6	전 남	33
대 전	6	경 북	28
울 산	3	경 남	29
세 종	2	제 주	5
경 기	51	전 국	343

- ※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해제절차
- 지정절차: 의료기관(신청, 별지 제8호의2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지정서 교부)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의료기관(신청, 별지 제8호의2서식) \leftrightarrow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지정서 교부) \to 여성가족부장관

- 해제절차: 의료기관(신청, 서식 19) ↔ 시장·군수·구청장(해제 통보)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의료기관(신청, 서식 19)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해제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



❖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참고사항

- 종합병원(준종합병원 포함)을 중심으로 전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 해당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에는, 응급실 및 야간당직실이 갖추어져 있는 산부인과 (여성병원), 성폭력피해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도 예외적으로 지정 가능
- 서비스 이용수요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개소수를 시·군·구별(시·도별)로 관리

5 |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성폭력피해자가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절차 생략
 - 성폭력응급키트 처치 시 처치료 지급:개당 75,000원
- 「성폭력 응급키트」보급
 - 시·군·구 및 시·도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에 신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이용 홍보, 정보 제공을 위한 가이드북·매뉴얼 등의 보급
 - ※ 성폭력피해를 준응급 증상으로 지정(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02, 2, 8)
 - 응급실 관리료의 건강보험 적용
 -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시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비에 대한 건갓보험 적용
 - 응급실에서 워내 조제·투약
 -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더라도 진료내역이 본인 이나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음
 - ※ 성폭력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제외대상 특수상병군에 포함



6 행정사항

-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 또는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또는 취소현황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27조 3항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함
- 각 시·군·구에서는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와 연계된 의료 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상담소 등과 의료기관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전담의료기관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진료대장 [서식 20] 및 성폭력응급키트 관리대장 [서식 21] 비치
- 관내 해바라기센터, 지방의료원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지정 하여 관리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범피기금) 의료비의 5% 내에서 관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홍보비로 사용 가능



[서식 18]

[서식 18]							
	전담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약	일		
ેવ જ વ	주 소 (소재지)	(전화 :)	
	명 칭			시설종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소 재 지						
	진료과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직인)	
	시·군·구	'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의료	! 기관개설 허가증	· 사본	1부				



[서식 19]

전담의료기관 해제 신청서						
ام احاد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소재지)		(전	화 :)		
	명 칭		시설종류 (종합병원급 여부)			
의료기관	소 재 지					
	진료과목					
해제사유						
,	성폭력피해자 전	년담의료기관 지정 t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1.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1부						



[서식 20]

성폭력피해자 진료대장

병원명 :

담당자 및 연락처 :

연번	진료일	이름	생년 월일	피해자 특성	피해 유형	진료 과목	키트 사용 여부	키트 처치료	키트 제외 진료비	진료비 합계

^{※ &#}x27;성폭력 응급키트 관리대장' 엑셀 파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서식 2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관리대장

병원명 :

담당자 및 연락처 :

수령일	개수	사용일	개수	사용 용도	잔여량

^{※ &#}x27;성폭력 응급키트 관리대장' 엑셀 파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4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 | 목 적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

2 시 사업 개요

- ㅇ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 위탁운영기관
 -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가정폭력: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사업 추진체계

여 성 가 족 부

- 기본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지원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한 국 가 정 법 률 상 담 소 대 한 변 협 법 률 구 조 재 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소요자금 신청 및 재배정
- 사업수행 및 정산·실적보고,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기정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

구조재단과 연계

• 성 폭 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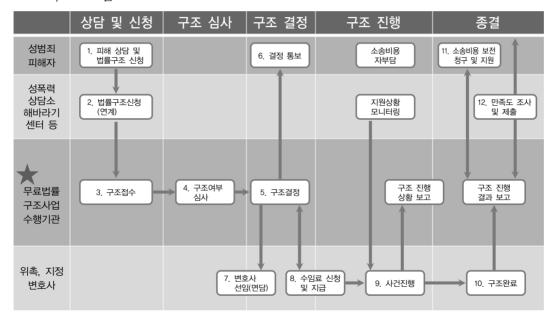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연계



- ㅇ 사업 지역: 전국
 -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가정폭력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 및 전국 28개 지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3 시 사업 대상

ㅇ 구조 흐름도



- 구조 대상 사건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 ㅇ 구조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서식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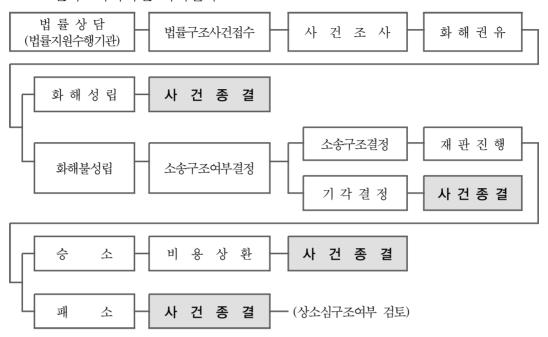


- 진단서 :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 ㅇ 구조비 지원 기준
 -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사건은 10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기준임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보전청 구하되, 변호사가 지급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 (실비 지원, 50만원 한도)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 (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인 부담 후 보전 ** 개인에 대한 비용보전 청구시[서식 23] 안내
 - 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심급당 사건 100만원 이내 지원
 - ㅇ 지원 한도액
 -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4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법무부의 국선 변호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신청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등 반환
 - ※ 단, 형사소송 지원을 위해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민·가사 소송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가사 소송에 대해서는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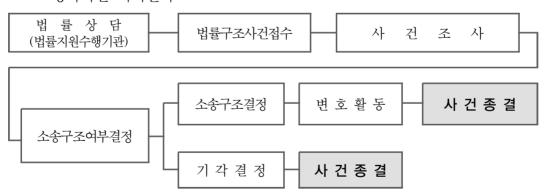


ㅇ 구조절차

- 민사·가사사건 처리절차



- 형사사건 처리절차





4 시 사업 내용

- ㅇ 법률지워사업
 - 민사·가사 소송대리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 형사소송 지원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판절차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 증거물 열람·등사 등이 가능하며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 법률상담
 -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
- ㅇ 법률계몽사업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홍보활동
 - 연계 상담소 및 변호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워크숍
 - 현지출장 생활법률강연 및 이동법률상담, 무료 대서 등

5 시 사업 기대 효과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홍보사업을 통해 사회 문제로 대두한 폭력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소송수행에 따른 시간적 기회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 비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수혜
- ㅇ 법률계몽활동으로 가정평화 구현 및 피해자의 인권침해 방지
- 폭력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률구조활동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



6 | 행정사항

- 시·도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 사업내용 안내와 홍보
- 상담소 및 시설 등에서의 상담과정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무료 법률구조를 원하는 것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상담소 및 시설 등에서 진단서, 사진 등의 초기 입증자료 확보를 도와주시기 바람
- 사업수행기관은 상반기 실적보고를 익월 15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정산보고 포함)은 익년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서식 24]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상담·지원과 관련, 우수사례를 관리하며 이를 매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서식 2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피 해 자	성 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 소			
가 해 자	성 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 소			
피해내용				
입증방법	2. 고소	사진, 목격자 진술서, 전 한 경우 고소장 이 달라진 경우, 불기소		판결문 등 첨부
상기 () 0 0 는(은		력 피해자로 상담 월 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소	- 인 기 관 - 재 지 ! 화 번 호		(기관인)



[서식 23]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비용 청구서(개인용)

※접수 번호				(←당,	사자는	기재하지	밀	· 것))			
	성명											
신청인 (피해자와 동일)	소재지							:	전화 팩스 메일			
입금 계좌	계좌번호	. () 은	-행			œ]]금주			
		်]적사항				Ū	해내	역		받	률구조내역
법률 구조	성 명	구	- 분	생년	년월일	피해 시기]해 [령	피해유	P형	(7	명 / 진행상황 형사: 죄명 / l사: 사건명)
대상자			일반 아동					세	□ 강간 □ 성추 [†] □ 기타			
		구 분				금 액				비고		
	변호사 년	보수	착수	금					원			
			인기	기대							원	
청구			송달	建星							원	형사 사건 🗆
내역	소송비	8	보된	 남금							원	민사 사건 □ 가사 사건 □
											원	기의 의원 니
		 합 :	 계								- 원	
		<u>н</u>	<u>'11</u>								- 12	
□ 무료법둘 □ 증빙서투			에 의해	법률- 20	구조 비원 ·	용 을 청구 ·	합니	귀다. ·	(서명 <u>!</u>	포는 날	-9])	
									. 10 -		. L:/	
												<u> 장</u> 귀하



[서식 24]

<u>가정폭력 · 성폭력 무료법률구조 만족도조사</u>

성 별	□남 □여 연령 ()세 구조의뢰일자 20
거 주 지	시・군・구까지만 기재
구조유형	□민사 □가사 □형사 □단순상담 □기타()
이용경로	□ 여성가족부 □ 언론 등 □ 상담소·쉼터 □ 수사기관 □ 이웃 □ 변호사단체 □ 친척 □ 기타()
지원단체	위촉변호사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오.

설문내용	1)	2	3	4	5
1. 담당변호사와는 쉽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까?	매우 잘됨 보통 안됨				
2. 담당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시간은 가질 수 있었 습니까?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않다			
3. 담당변호사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 구조과정에서 담당변호사로부터 가해자와의 협의를 종용받은 적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5. 담당변호사가 사건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6. 이 무료법률구조제도가 본인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7. 이용과정에서 친절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8.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8-1. 6번문에서 만족으로 응답하신 경우 - 특히 어떤 점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사항을 기재하세요				
8-2. 6번문에서 불만족으로 답하신 경우 - 특히 어떤 점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셨습니까?	불만사항을 기재하세요				
9. 본인과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에게 법률 구조를 받도록 권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매우 있다	있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참고자료]

가정폭력 · 성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별 연락처(가정폭력·성폭력 법률구조)

- 국번없이 132 (각 지역지소로 연결)
- 수화용 화상전화 070-7947-7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성폭력 법률구조)

주 소	상담전화	팩 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4 풍림빌딩 14층	02-3476-6515 02-3476-6511	02-3476-6512

■ 한국성폭력위기세터(성폭력 법률구조)

주 소	상담전화	팩 스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길 14	02-883-9285	02-883-928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법률구조)

○ 국번없이 1644-7077 (본부, 지역 안내)

※ 세부 연락처는 법률지원매뉴얼 참고



5 돌봄 비용 지원

1 | 목 적

○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통해 성폭력피해 아동 등의 건강한 보호 및 조속한 피해회복 지원

2 시사업 대상 및 내용

- **가. 지원대상**: 아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워*
 -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 ㅇ 성폭력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연령제한없이 1~3급)
 - ※ 예시) 한부모, 맞벌이, 조손가정, 장애부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기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폭넓게 인정

나.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이용 시(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장애아양육지원, 활동보조인 등) 자부담 비용분에 대해 지원
 - ※ 돌보미는 돌봄 서비스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가족 제외)
 - ※ '15년 6월부터 활동보조인 이용 장애등급 확대(기존 2급에서 장애 3급까지(복지부))
- 다.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 원칙, 연장 12개월 포함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 **라.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원칙, 연장 6백만원 포함 최대 9백만원 까지 가능
 - ※ <u>지원기간 및 금액 한도 지원 후에도</u>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일 경우, 시·군· 구청장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



구 분	시간당 기준 단가(예 시)
일 반 단 가	시간당 평균 7~8천원

- ※ 상기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돌봄서비스의 시장가격, 야간·주말 추가요금, 돌봄 제공자의 교통비 (시외의 경우 등)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단가 초과 시 관련 서류에 사유를 반드시 명기
- ※ 가사 베이비시터도 허용함

3 │ 지원 절차

돌봄비 지급 신청 시(최초/연장) 돌봄비 지급 시 피해자 피해자 (최초)서식2 제출 돌봄비 지급 (연장)서식4 제출 (최초)서식2 제출 돌봄비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연장)서식4 제출 지급 돌봄비 (최초)서식3 제출 돌봄비 지급 (연장)서식5 제출 지급 사업주관기관 사업주관기관 돌봄비 배정 시・군・구 시・군・구

- 돌봄 비용 지워 안내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시·군·구에서 성폭력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돌봄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 후 돌봄비용 지원제도 안내
- 0 비용 첫구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돌봄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돌봄 비용을 보전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수행기관에 피해자 부담액에 대한 보전 청구
 - 제출서류
 - 돌봄비용 지급 신청서 1부[서식 26]



-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입금증 사본)
-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등
-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각 시·도별 사업주관기관에 지급 신청

0 비용 지원

- 지급청구름 받은 사업주관기관은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사업수행기관에 지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돌봄 비용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은 이를 피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돌봄 비용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집행(사업주관기관을 통한 집행도 가능)하고, 지급절차 및 구비 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 내역을 보존 관리
- 지급, 화수 규정

지 급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서 최대 6개월 지원(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

지급 중단 및 환수

- ▶ 돌봄 비용의 지급은 피해 발생 후부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비용이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화수
 - ▶ 화수방법
 -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환수 여부 결정
 - ※ 심의위 구성 및 소집절치는 연장결정방법과 동일
 - 돌봄비용 화수결정서 및 납입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화수대상자에게 통보
 - ※ 환수는 이지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 시·군·구청장은 환수한 돌봄 비용을 당해년도 지원분과 과년도 지원분으로 구분
 - 징수 당해연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 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돌봄 비용지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 능력 부족,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베이비시터(아이 돌보미) 회사에 직접 지원 가능(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추가 확인 및 실태관리 철저요망)
- 본인부담 후 보전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돌봄 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과 주관기관 또는 지자체가 협의하여 우선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연장 지원 신청[서식 28]을 하였을 경우, 지원 한도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음① 1차 연장
 -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군·구청장(피해자가 시·군·구로 직접 연장 신청한 경우)이 최대 6개월, 3백만원 한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군·구청장(피해자가 시·군·구로 직접 연장 신청한 경우)은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평소 생계곤란 여부(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일상생활 복귀곤란 여부(의사 소견서 등)를 고려하여 지원 연장 결정
 - ② 2차 연장
 - 심의위원회가 최대 6개월, 3백만원 한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심의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사유, 지원 연장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 ※ 심의위원회는 시·군·구 담당자,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를 포함하되, 위원 중 1/3을 아래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됨
 - 1.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심의위원회의 의결(서면의결 가능)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 의결은 심의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함
- 사업주관기관 및 지자체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에 따라 우선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과 함께 돌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 확인

4 | 행정 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 ㅇ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의사항 안내
 -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가 친족 관계일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아 양육지원사업) 등 정부지원 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 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에 대해서만 지원(중복지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가능)
 - 피해자 본인에 대한 돌봄 비용만 지원하므로, 피해를 입지 않은 형제·자매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까지 지원 불가
- 돌봄서비스 제공자(아이돌보미 등)에게 유의사항 안내
 - 아동의 피해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가급적 부모 등 보호자가 돌보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보호자 등과 면담, 전화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월 1회 이상)
 -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아동의 심리 상태 및 정서적 어려움 등을 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설명하고, 피해 아동을 돌볼 시의 유의사항, 2차 피해 방지 등을 안내하여야 함
 - 아동의 피해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의 상태에 대해 알릴 것인지 보호자와 협의



5 시업주관기관

■ 시도별 사업주관기관

시·도	시도내 사업 수행기관 명단	연락처
서 울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02-3274-1375
부 산	부산해바라기센터	
대 구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053-421-1375
인 천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032-423-1375
광 주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062-232-1375
대 전	대전해바라기센터	042-280-8436
울 산	울산해바라기센터	052-246-3117
세 종	세종시 여성가족과	044-300-3322
경 기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031-708-1375
7l. 0l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033-652-9843
강 원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033-252-1375
충 북	충북해바라기센터	043-272-7117
ि ठ प	충청해바라기센터(아동)	043-857-1375
충 남	충남해바라기센터	041-567-7117
전 북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063-246-1375
전 남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061-285-1375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054-278-1375
권 ㅂ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054-843-1117
경 북 	구미여성종합상담소	054-463-1388
	경산로뎀성폭력상담소	053-853-5276
경 남	경남해바라기센터(아동)	055-754-1375
제 주	제주해바라기센터	064-749-5117



[서식 25]

돌봄비용 지원 실적

1. 피해아동 지원

(단위 : 명)

T101	피해자 특성				피해	유형		피해자의 연령				
지원 기관명	합계	비 장애인	장애인	합계	강간	성추행	기타	합계	5세 미만	5~9세 미만	10~13세 미만	
00												
센터												
00												
상담소												

[※] 합계는 모두 일치하여야 함

(단위 : 명)

-101		지원	기간		지원금액						
지원 기관명	합계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합계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00											
센터											
DD											
상담소											

[※] 합계는 모두 일치하여야 함

2. 피해자 자녀 지원

(단위 : 명)

	지원한 피해자 자녀의 수			피해자 자녀의 연령			지원 기간			지원금액							
지원 기관명 	합계	1명	2명	3명 이상	합계	5세 미만	5~9 세 미만	10~ 13세 미만	합계	3개월 미만	3~6 개월	6개월 이상	합계	100 만원 이하	200 만원 이하	300 만원 이하	300 만원 이상
ㅇㅇ 센터																	
DD 상담소						-											

[※] 합계(지원한 피해자 자녀의 수 제외)는 모두 일치하여야 함



[서식 26] 피해자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자체 직접 신청 시

돌봄비용 지급신청서										
	성 명				생년윝	일				
지원대상자 (피해자)	주 소	(연락처:)								
(= • , 1)	지원	사유								
피해년도 일자				년	월					
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년 월	! 일	~ 년	월 일	(총	는 시간)			
총 돌봄 비용 (자부담분)		총		원 ((피해자 본역	인부덤	남액 원)			
돌봄서비스	기관명				연락처					
이용 기관	7140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성 명				피해자 및 }가 <mark>족</mark> 과의	관계				
드립네스네	금융기관 및	! 지점명								
돌봄비용비 지급 계좌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돌봄 비용	용의 지	급을 수	위와 같이 /	신청합	· 나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피해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상담소장 귀하 () 센터장 귀하										
• 첨부서류 1.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입금증 등) 1부 2.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1부(상담소 또는 해바라기센터로 제출 시에는 불필요). 끝.										



[서식 27] 사업수행기관 → 사업주관기관 신청 시

	돌봄비용 지급신청서(기관용)										
신청기관	기관명			연락처							
신성기선	담당자성명			건덕시							
	성 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 (피해자)	주 소			(연락처:)						
	지원사	o II									
	금융기관 및	지점명									
신청기관 계좌	계 좌 박	헌 호									
	예 금	주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돌봄 비용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기관 : (인)										
() 장 귀현	i }									
• 첨부서류 1. 돌봄비용 지급 신청서(피해자) 1부 2.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입금증 등) 사본 1부 3.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1부. 끝.											



[서식 28] 피해자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자체 직접 신청 시

돌봄비용 지원 연장 심의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피해 유형									
지원대상자 (피해자)	피해년도 일자	년 월								
	연장 지원 필요 사유 (자유 기재)									
기존 돌봄비용 지원 기간 및 지원액	총	년 월 ~ 년 월 (총 시간) 원 (피해자 본인부담액 원)								
향후 필요한 지원 기간 및 지원액 한도		년 월 ~ 년 월 (총 시간) 총 원								
성폭력 피해자 회	복을 위한 돌봄	비용의 연장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피해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상담소장 귀하 () 센터장 귀하										
• 첨부서류 1. 연장필요 증빙서	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증명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등) 1부.								
 ※ 피해자는 지원연장심	님의신청서, 소 득증	방서류 등을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시·군·구 중 1개 기관에 제출								



[서식 29] 사업수행기관 → 사업주관기관 신청 시

-	돌봄비용	용 지	원 연정	: - 1	님의신청서(기	기관용)					
신청기관	기관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지원대상자 (피해자)	피해 -			년 월							
X 1 II 17	연장 필요 (자유										
기존 돌봄비용 지원 기간 및 지원액		년 월 ~ 년 월 (총 시간) 총 원 (피해자 본인부담액 원)									
향후 필요한 지원 기간 및 지원액 한도			년	월 <i>^</i> 총	~ 년 월 (총	시간) 원					
성폭력 피해자 회부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돌봄 비용의 연장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기곡	관 :		(인)					
() 정	구하									
	• 첨부서류 1. 돌봄비용 연장심의신청서(피해자) 1부 2. 연장필요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증명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등) 사본 1부.										

2018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2018년 1월 인쇄 2018년 1월 발행

발행인 : 정 현 백

발행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02-2100-6388 FAX/02-2100-6484

인 쇄 처 : 중앙기획·인쇄

전화/02-736-2866~7, 02-737-1610